

제30차 여성정책포럼

여성의 사회적 권리와 여성정책

| 일 시 | 2006년 4월 7일 (금) 15:00~16:20

| 장 소 | 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B1

한국여성개발원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앞두고 ‘일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온전한 사회권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여성의 아내/어머니로서의 지위와 연관시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성의 노동권과 부모권이 동시에 보장될 때 비로소 시민으로서의 여성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여성들이 일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조정해 가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여성주의적 접근을 통해서 여성의 시민권에 대한 재조명과 전망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권리와 여성정책”을 주제로 『제30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하여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여성의 노동권과 사회권, 여성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정책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값진 의견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4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서명선

행사 일정

시 간	세 부 내 용
15:00~15:05	인 사 말 서 명 선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15:05~15:50	<p>사 회 강 근 복 (충남대학교 교수)</p> <p>주 제 : 『여성의 사회적 권리와 여성정책』</p> <p>발 제 I : “광역자치단체의 여성권한척도(GEM) 비교” 고 숙 희 (세명대학교 교수)</p> <p>발 제 II : “여성의 사회권과 아내/어머니 지위-시민권에 관한 여성주의적 고찰” 황 정 미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p> <p>발 제 III : “한국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과제” 박 수 미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p>
15:50~16:20	<p>지정토론 김 혜 순 (행정자치부 참여여성팀장)</p> <p>신 동 면 (경희대학교 교수)</p> <p>김 영 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p>
16:20~	폐 회

목 차

발 제 I

광역자치단체의 여성권한척도(GEM) 비교: 서울시, 경북, 충북 3	
고숙희(세명대학교)	
I. 서 론 3	
II. 여성의 권한 4	
1. 권한(Empowerment) 4	
2.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5	
3. 연구를 위한 변수간 관계 10	
III. 여성 권한척도 측정 10	
1. 여성정치인 비율 10	
2. 전문·기술직, 고위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11	
3. 여성의 소득현황 12	
4. 여성권한척도 산출 13	
IV. 정책적 함의 17	
V. 맺는말 19	
<참고문헌> 20	

발제 II

여성의 사회권과 아내/어머니 지위 - 시민권에 관한 여성주의적 고찰 5·2	
황정미(한국여성개발원)	
1. 도입 : ‘생산적 복지’와 사회권 3	
2. 시민권 이론의 검토 - Marshall의 시민권에 대한 비판 8	
(1) 시민권의 보편성과 젠더 8	
(2) ‘완전한 성원권(full membership)’과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8	

3. 파생적 권리와 독자적 권리 - 국민연금의 사례	33
(1) 연금수급권과 젠더	33
(2) 연금제도 실태와 여성의 가족지위	6
4. 결 론	40
<참고문헌>	42

발제 III

한국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과제	74
박수미(한국여성개발원)	
1. 들어가는 말	47
2. 생애주기별 일-가정 조화 현황	4
1) 가족주기별 특성	47
2) 가족주기별 생활시간: 일, 가족생활, 여가	6
3) 맞벌이 부부의 가족주기별 생활시간: 일, 가족생활, 여가	55
4) ‘미취학주기’ 이중부담의 완화 전략: 보육의 시장화	85
3. 맺음말	60
<참고문헌>	62

광역자치단체의 여성권한척도(GEM) 비교:
서울시, 경북, 충북

고 숙 희
(세명대학교)

광역자치단체의 여성권한척도(GEM) 비교: 서울시, 경북, 충북

고 속 희 (세명대학교)

I. 서 론

UN은 1990년 이후 매년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에는 경제성장으로 나타나는 지표가 아니라 각 국가 국민들이 얼마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가를 나타내는 다양한 척도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1995년도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¹⁾는 남성과 비교해서 주요 사회영역, 특히 정치 경제분야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이 얼마나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전체 여성의 힘을 대표하는 척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와 남녀평등지수(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는 2004년 기준 각각 29위와 30위를 차지하여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여성권한척도는 예외로서 1995년에 처음 이 척도가 발표된 이래로 다른 지수에 비해 월등히 낮아 1995년도에 90위, 1999년도에 78위, 2003년도에 63위, 그리고 2004년도에는 68위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성장이 자동적으로 여성권한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권한은 단순히 경제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특정사회의 전통, 문화, 가치관 등 다양한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 즉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구성의 기반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것들의 변화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여성권한향상에 관

1)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1996년에 UNDP에서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 1995]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Gender Empowerment Measure를 '여성권한척도'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 이 자료가 사용되는 용도를 기준으로 보면 '성별권한지표'의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서 GEM은 성과 관련된 권한척도이기 때문에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여성의 권한이 남성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에 여성의 권한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도 여성권한척도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심을 가진 국가들은 대체로 평등을 목표로 하는 의도적인 국가적 정책 및 제도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동안 우리 정부도 여성권한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여성고용목표제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30% 등 각종 여성배당비율제도(quota system)를 실시하였고 사부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작년도 여성권한척도의 순위가 말해주는 것처럼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가 않다.

이러한 낮은 여성권한척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수준은 더 심각하다.²⁾ 중앙정부의 경우 정책결정자의 정책의지의 침투가 비교적 용의한 데 비해 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 논문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여성권한척도를 산출하여 여성권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를 산출하는 방법은 유엔디피(UNDP)가 측정한 것과 동일한 변수와 방법을 이용해서 서울시, 경북, 충북의 것을 산출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각 자치단체에 의뢰하여 얻었다.³⁾

II. 여성의 권한

1. 권한(Empowerment)⁴⁾

기본적으로 권한을 형성한다는 것은 능력(capability)의 확대에 달려있다(UN, 1996). 능력이 확대된다는 것은 선택기회의 확대를 의미하며 선택기회의 확대는 자유의 증대를 수반한다. 예컨대, 누구나 시장에서 식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너무 가난하여 구입할 능력이 없다면 그 자유는 아무 의미가 없다. 누구나 신문을 읽을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는 문자해독능력에 달려 있다. 이러한 권한은 또한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승인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진다.

2) 2000년도에 고숙희(2000: 295-316)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충청북도의 GEM은 0.2383이었는데, 이 수치는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GEM 수치 0.336보다 월등히 낮다.

3) 연구를 위해 정책학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각 시도에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연구가능한 자료가 수집된 곳이 여기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3개 시도이고 나머지는 회신이 없었다. 자료의뢰에 응한 자치단체가 하나 더 있었지만 측정이 불가능하게 회신하여 제외하였다.

4) empowerment라는 단어는 power를 갖게한다는 과정적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 그리고 power자체도 권한, 권력 등이 상호교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empowerment를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서는 권한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지만 의미로 보아 권력과 상호교체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런데 이 권한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 개념이다(Marilee Karl, 1995: 14). 권한형성의 과정은 개인적일 수도 있고 집단적일 수도 있는데, 여성의 권한형성은 상호 강화적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들의 연속된 과정이다(Marilee Karl, 1995)

첫째는 성의 평등을 향한 첫단계로서 여성의 위치, 차별, 권리, 기회 등에 관한 의식형성이고, 둘째는 능력향상 및 기술개발이다. 특히 사람과 제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획, 의사결정, 관리, 활동수행 능력면의 향상 및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는 가정, 공동체, 사회에의 참여와 통제력 및 의사결정권한의 확대이고, 넷째는 성간의 평등확대를 위한 행동이다.

즉 권한형성이라는 것은 의식화와 더 많은 참여, 더 많은 의사결정권한 및 통제력을 얻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 것이다.

2.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권한을 측정하고 그것을 수치화(지표화)하여 발표한 것은 UN 산하기관인 유엔개발계획(UNDP)의 '1995년도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1995)가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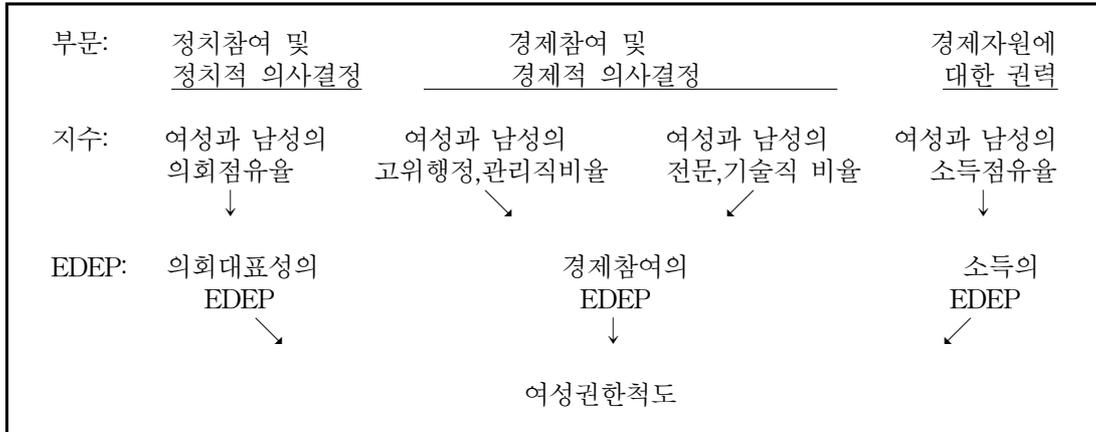
이 보고서에서는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두 가지의 중요한 측정을 하였는데, 성별평등지수(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와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가 그것이다.

성별평등지수란 평균수명, 교육수준(문자해독률, 초등-고등교육 등록비율), 소득수준 등의 남녀간 차이를 산출한 지수이다(UNDP, 1995). 이에 비해 여성권한척도란 남성과 비교해서 여성이 정치, 경제, 행정 영역에서 얼마만큼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성별평등지수가 여성능력의 확장에 초점을 두는데 비해 여성권한척도는 생활상의 유리한 기회를 얻기 위해 그러한 능력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www://undp.org](http://undp.org)). 따라서 여성권한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성의 경제, 정치, 전문적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연관된다.

유엔개발계획 보고서에 게재되는 여성권한척도는 정치참여 및 정치적 의사결정, 경제참여 및 경제적 의사결정, 경제자원에 대한 힘 등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http://hdr.undp>) 그 관계를 표로 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성별권한척도의 구성



자료: hdr.undp.org

주: EDEP: 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Percentage

이렇게 산출되는 GEM에 대해 UNDP에서는 이 척도가 보편적인 처방적 지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undp.org: 1995; 2004). 즉 여성권한척도의 결과는 경제적, 정치적 참여의 결과일 수도 있고, 여성의 진입을 막는 구조적 장벽때문일 수도 있고, 또 사회내에서 남여가 각자 원하는 역할을 선택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UNDP, 1995: 83). 다시 말해서 남여간에 선택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려는 것이 목표이고,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서 특정한 비율을 달성하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UN은 각 국가들의 여성비율을 근거로 한 지표를 근거로 순위만 정할 뿐 그것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UNDP는 GEM이 가지는 한계도 지적하고 있는데, 예컨대 성평등이나 성권한의 개념이 다양한 여러 가지 통계지표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지표로 나타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심오한 개념이라는 것이다(http://hdr.undp.org). 때문에 GEM은 다양한 측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로서 여성의 비시장적 활동에 대한 참여와 국가내 정치 및 행정의 하위수준에서의 여성참여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여성참여 및 목표달성을 견지하는 하나의 유용한 도구로서는 쓰임새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UNDP가 여성권한척도의 순위만 정하고 평가를 하지 않고 또 처방적 지표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충분히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또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지표때문에 여성의 권한이 낮아 졌는지를 검토하여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통해 여성의 권한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정치참여 및 정치적 의사결정

여성권한척도 산출을 위한 정치참여 및 정치적 의사결정은 의회의 여성점유율로 지수화된 다. 의회의 여성점유율은 정치적 기회에의 접근성, 정치적 의사결정에의 참여가능성 및 권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회의 여성점유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여성이 제 역할을 해준다면 정치과정에서 새로운 시각과 또 다른 우선순위를 적용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Marilee Karl, 1995). 여성의 정치참여로 그 동안 정치사회에서 간과되었던 여성에게 반응적이 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사회내 모든 사람들의 요구에 좀 더 민감해 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정치에서 여성만이 여성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 여성 의원이 여성적 관점보다는 정당의 결정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성의원이 여성이익에 더 반응적인 것은 사실이다(Karin L. Tamerius, 1995).

1995년에 유엔이 정해 놓은 여성의 의식확보 권고치는 30%선인데, 2004년 기준으로 이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45.34%)과 노르웨이(36.4%) 두 나라 뿐이다.⁵⁾ 이 때문에 유엔여성발전분과(United Nations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DAW)에서는 여성의 의회진출 및 관리직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첫째, 상대적으로 짧은 여성 정치참여의 역사적 전통과 캠페인, 공개토론, 대중매체 등에 대한 경험부족

둘째,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팽배, 여성을 포함한 선거권자들의 여성후보자 및 정치인에 대한 신뢰·지원 부족

셋째, 가정과 사회에서의 전통적인 여성역할과 정치경력을 조합하는 경험미숙

넷째, 경제적 의존성과 재정 수단의 부족

다섯째, 일반적인 교육 및 특히 정치적 교육의 불충분

여섯째, 여성자신의 정치, 특히 고위직에서 참여를 꺼리거나 자신감 없음 등을 지적하면서 (Marilee Karl, 1995: 64)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2) 경제참여 및 경제적 의사결정

경제참여 및 경제적 의사결정은 전문직·기술직 및 고위 행정·관리직의 성별 점유율로 지수화 된다. 행정직과 관리직은 경제적 의사결정기회에의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5) 우리나라는 2002년 총선거결과 전체의원 299명 중 39명이 여성이 당선되어 현재 13%수준이며, 아시아에서 GEM이 가장 높은 일본도 9.9%선이다.

전문직과 기술직은 경력개발에 필요한 기회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① 고위행정, 관리직의 성별 점유율

조직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일차적인 근거는 직위이다. 합법적인 권한행사가 직위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윤우곤, 1997: 303) 타인들이 그 권력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박연호, 1998: 344). 따라서 조직 계층구조에서 높은 직위일수록 권한이 크다. 조직에서 고위직일수록 강제, 보상, 규범, 전문지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권력형성에 중요한 원천이 된다. 또한 권한은 리더십의 핵심이고(Georgia Duerst-Lahti & Rita Mae Kelly, 1995: 30) 이 리더십은 정책 및 의사결정권과 연관된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공공부문에서든 사부문에서든 낮은 계층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권력, 정책 및 의사결정직에서의 대표성이 매우 낮다. 1995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국가지도자, 주요기업의 최고관리자, 국제조직의 최고위층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미만이였다(Marilee Karl, 1995). 그 이후 여성점유율이 계속 상승하여 2004년 기준으로 OECD국가들의 여성각료비율이 25.7%에 달하고 있다(한국일보, 2005. 8. 11).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여성 국회의원 및 고위임원을 합친 비율이 5%, 행정 및 경영관리자 비율이 6%, 일반관리자 비율이 7%로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한숙, 2004에서 인용) OECD국가들에 비해 고위행정, 관리직의 여성비율이 대단히 낮다.

여성이 고위행정직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요인들은 개인적, 조직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Mani, Bonnie G., 1999: 524). 여성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장애는 자녀교육, 가족, 동기, 가정에 대한 의무 등 성역할과 관련된 것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관습,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 일과 가사·육아병행의 어려움 등이 그에 속한다.

조직적 차원에서의 장애요인은 행정부서에 여성이 점하고 있는 자리는 승진이 불리한 보직이라는 것과 관련된다. 남성들은 주로 지도적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는 반면 여성은 지원적, 위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계선에서 권한을 가지거나 관리직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실무경험기회가 제한된다(Mary E. Guy: 1994: 82). 즉 사회복지업무, 간호업무, 초중등교육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선발, 승진, 고충제도, 훈련, 경력발전기회, 직무분류 등 모든 제도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발전전망이 적은 '여성'직무범주에 속하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일단 한 번 여성과 연관되는 직무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 직무는 권위를 상실하는 오염효과(contamination effect)까지 발생하고 있다(Mary E. Guy: 1994: 84).

또 다른 한편으로 공공관료조직에서 여성은 능력면에서 의심을 받고 있고(Katherine C.

Naff, 1994),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성처럼 행동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Cheryl Simrell King, 1995: 87; Mary E. Guy: 1994: 80).

기업의 경우도 정상에 도달하는데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는 실수가 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The CPA Journal, 1998: 9). 경영학을 전공한 젊은 여성들은 교육과정동안 비교적 평등한 관계에 익숙해 있다가 기업체에서 승진해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될 위험에 준비가 안돼 고전을 금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경제참여는 계속 증가되어 왔지만 고용기회, 권리, 보수 등의 면에서 여전히 불평등은 남아 있다. 또한 여성관리자들의 수도 적고 노조간부도 드물기 때문에 여성의 모성보호나 직업의 안정성, 육아 등의 열악한 상황의 개선이 더 어렵다(Marilee Karl, 1995).

② 전문·기술직

전문·기술직의 권한은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전문·기술에 관한 정보 보유정도에 의해 평가된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때 그 지식이나 기술에 관한 정보가 중요할수록, 그리고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이 적을수록 전문적 권한은 강화된다(이창원, 최창현, 1997: 288).

전문·기술직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진 전문성과 기술의 비대체성 때문이다(박우순, 1996: 373).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전문지식과 기술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으로 대체할 수 없으면 그 만큼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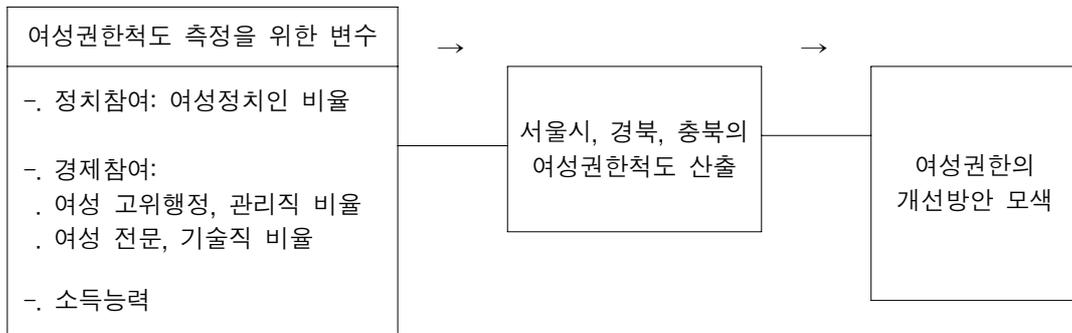
(3) 소득능력

여기서의 소득능력이란 남성 1인당 소득에 대한 여성 1인당 소득의 비율을 의미한다(www.undp.org). 즉 남성소득을 1로 보았을 때 여성소득이 몇 %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다. 성별평등지수에서도 소득을 측정하긴 하지만 소득이 기본적인 인간개발 - 수명, 문자해독률, 빈곤탈피 - 에 기여하기 때문에서 측정하는데 비해, 성별권한척도에서는 소득자가 좀 더 광범위한 가능성 및 대안들을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UNDP, 1995: 82).

3. 연구를 위한 변수간 관계

이 논문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 여성의 사회적 권한을 측정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여기서는 UNDP에서 기준으로 선정한 변수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여성의 권한을 측정하기로 한다. UNDP는 남성 대비 여성정치인 비율과 남성대비 여성 고위 행정·관리직 비율, 남성대비 여성 전문·기술직 비율, 여성과 남성의 임금점유율 등의 변수가 사용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수화하는 데에는 남녀경제활동인구비율, 남성대비 여성임금비율(비농업), 1인당 GDP 등의 자료 등이 활용된다. 이 연구의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를 위한 변수간 관계



이 4개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제1단계에서는 여성의 정치대표지수와 여성 행정·관리직 점유지수 및 여성 전문·기술직 점유지수를 측정하고, 제2단계에서는 성별 소득분배지수를 계산한다.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이 3개 지수의 평균치를 산출하여 여성권한척도를 산출한다.

III. 여성 권한척도 측정

1. 여성정치인 비율

여성권한척도의 주요 변수 중 하나가 여성정치참여비율이다. 이 때의 정치참여정도는 의회의원 수를 의미하고, 의회의원 수는 전체의원 중 여성과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낸다. 서울시와 경북, 충북의 여성 및 남성의 의회의원비율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의회의원들의 여남비율

단위: %

지 역	여	남
서울시	8.8	91.2
경 북	2.5	97.5
충 북	2.7	97.3

비율면에서 서울시가 경북이나 충청에 비해 월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의원수가 높다는 것은 여성정치참여의 동등지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권한척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2. 전문·기술직, 고위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1)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여기서의 전문·기술직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의 ‘전문가’와 ‘기술공 및 준전문가’를 포함시켰다.

각 시도별 전문기술직 구성비는 다음 <표 3>과 같다. 이 중 충북은 자체적으로 여성통계를 산출하고 있었고, 서울시와 경북의 경우는 여성통계를 따로 산출하지 않아 전국통계를 사용하였다.

<표 3> 전문, 기술직의 여남구성비율

단위: %

지 역	여	남
서울시	40.6	59.4
경 북	40	60
충 북	44.7	55.3

전문기술직의 경우는 충북의 비율이 높고 서울시와 경북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문기술직에 대한 이 수치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컨대 2004년도 GEM 1위인 노르웨이의 경우 여성전문기술직 비율이 49%이고 2위인 스웨덴의 경우 50%선이다(<http://hdr.undp.org>). 2006년 3월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에서 여성전문인력이 200만명을 상회하고 있어(세계일보, 3.22) 이 분야의 발전은 매우 빠른 편이다.

(2) 고위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고위행정관리직의 비율은 공무원의 경우는 5급이상비율을 의미하고 관리자비율은 기업체의 과장급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수치도 충북은 자체적으로 산출한 통계를 사용하였고, 서울과 경북의 경우는 5급 이상 비율은 각 시도에서 제시한 자료를, 그리고 고위관리직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평균인 2%를 적용하였다.

<표 4> 행정·관리직의 여남비율

지 역	단위: %	
	여	남
서울시	6	94
경 북	2.7	97.3
충 북	1.7	98.3

행정관리직의 경우는 서울시가 가장 높고 경북, 충북 순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체 5급 이상 공무원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엔이 발간한 1999년도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이 수치가 가장 높은 미국의 경우는 44.3%에 이른다(UN, 2000: 중앙일보, 2000. 1. 13에서 인용). 2004년 기준으로 GEM 1, 2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경우 행정관리직의 비율이 각각 28%, 31%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았을 때 1999년 말 현재 전체 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9.7% 정도이지만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1999년말 현재 8.1%이고(행정자치부, 2000: 152), 2004년말 현재는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34%이고 5급 이상은 11.9%이다(행정자치부, 2005).

3. 여성의 소득현황

2004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경북, 충북의 남성대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42.2%, 44.2%, 39.8%이다(서울시, 경북, 충북).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평균임금은 충북의 경우 자체적으로 산출한 수치가 여성 1,043,000 대 남성 1,672,000(2003년)이고, 서울시와 경북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산출한 자료가 없어 전국통계를 제시하였는데, 그 수치는 여 1,286,258원 대

남 1,957,976원을 적용하였다(2004). 이것을 남성대비 여성임금의 비율로 표시한 것이 다음 <표 5>이다.

<표 5> 남성 대비 여성임금율

단위: %

서울시	65.7
경 북	65.7
충 북	62.4

전국통계를 사용한 서울시와 경북의 경우가 충북에 비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4. 여성권한척도 산출

GEM은 정치·경제적 활동영역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상대적 권한(relative empowerment)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앞에서 밝혔다.

성별 사회적 권한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유엔은 ‘동등배분비율’(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percentage: EDEP)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구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개념’(population-werghted(1-ε) averageing)을 의미한다.

(1단계) EDEP를 활용한 여성 정치대표지수

여성정치대표지수는 서울시, 경북, 충북의 남녀 인구비율을 고려해서 현재 여성의회의원 수가 갖는 의미를 지수화한 것이다(<표 6> 참조).

<표 6> 각 시도별 여성정치대표지수

지 역	정치대표지수
서울시	- 지방의회 의원점유: $[0.498(91.2)^{-1} + 0.502(8.8)^{-1}]^{-1} = 15.9985$ - 여성의원점유지수: $15.9985/50 = 0.3200$
경 북	- 지방의회 의원점유: $[0.503(97.5)^{-1} + 0.497(2.5)^{-1}]^{-1} = 4.9029$ - 여성의원점유지수: $4.9029/50 = 0.0981$
충 북	- 지방의회 의원점유: $[0.503(97.3)^{-1} + 0.497(2.7)^{-1}]^{-1} = 5.2742$ - 여성의원점유지수: $5.2742/50 = 0.1055$

인구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개념을 활용해서 여성의 정치참여지수를 계산한 결과 서울시가 0.3200으로서 충북 0.1055, 경북 0.0981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절대적인 수개념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간의 비율이 중요한데, 경북의 경우 낮은 여성의원비율이 낮은 지수로 나타나고 있다.

(2단계) EDEP를 활용한 고위행정관리자, 전문기술직 대표지수

고위행정관리자, 전문기술직 대표지수도 여남간 인구비율을 고려한 각 직업들의 비율이 갖는 의미를 지수화한 것이 다음 <표 7>이다.

<표 7> 고위행정관리자, 전문기술직 대표지수

지 역	지 수
서울시	-. 고위 행정관리직점유: $[0.498(94)^{-1} + 0.502(6)^{-1}]^{-1} = 11.2404$. 여성 고위 행정관리직 점유지수: $11.2404/50 = 0.2248$ -. 전문기술직점유: $[0.498(59.4)^{-1} + 0.502(40.6)^{-1}]^{-1} = 48.1966$. 여성전문기술직 점유지수: $48.1966/50 = 0.9639$ 평균: $(0.2248 + 0.9639)/2 = 0.5944$
경 북	-. 고위 행정관리직점유: $[0.503(97.3)^{-1} + 0.497(2.7)^{-1}]^{-1} = 5.2842$. 여성 고위 행정관리직 점유지수: $5.2842/50 = 0.1057$ -. 전문기술직점유: $[0.503(60)^{-1} + 0.497(40)^{-1}]^{-1} = 48.0577$. 여성전문기술직 점유지수: $48.0577/50 = 0.9612$ 평균: $(0.1057 + 0.9612)/2 = 0.5334$
충 북	-. 고위 행정관리직점유: $[0.503(98.3)^{-1} + 0.497(1.7)^{-1}]^{-1} = 3.3552$. 여성 고위 행정관리직 점유지수: $3.3552/50 = 0.0671$ -. 전문기술직점유: $[0.503(55.3)^{-1} + 0.497(44.7)^{-1}]^{-1} = 49.4592$. 여성전문기술직 점유지수: $49.4592/50 = 0.9892$ 평균: $(0.0671 + 0.9892)/2 = 0.5282$

이 지수도 서울시가 0.5944로서 0.5334, 0.5282를 차지한 경북과 충북에 비해 높는데, 그 이유는 5급이상 여성공무원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3단계) 여성 소득지수 계산

여성소득점유지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통계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여성소득점유지수 계산을 위한 각 연도별 통계치

지역	성별경제활동 인구비율	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	1인당 총생산 (GRDP)
서울시	여 : 남 = 42.2 : 57.8	65.7	\$15,867
경북	여 : 남 = 44.2 : 55.8	65.7	\$18,141
충북	여 : 남 = 42 : 58	62.4	\$14,250

* 1인당 GRDP⁶⁾계산의 경우 서울시, 경북도, 충북도에 각각 문의한 2004년도 GRDP를 2004. 12. 31일 기준환율 1,144.6원으로 나눈 것임

① 서울시 소득지수 측정

<표 8>의 수치를 이용해서 산출한 서울시 여성의 EDEP 소득지수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서울시 여성이 소득점유지수

구분	지수산출과정
① 평균임금대비 여성임금과 남성임금의 비율(W): 평균임금대비 여성임금비율: 평균임금대비 남성임금비율:	W=0.422(0.657) + 0.578(1) = 0.8553 -. 0.657/0.8553 = 0.7682 -. 1/0.8553 = 1.1692
② 소득점유: {[(여성임금/평균임금)*여성경제활동인구비율] + [(남성임금/평균임금)*남성경제활동인구비율] = 1이 됨}	-. 여성: 0.7682 * 0.422 = 0.3242 -. 남성: 1.1682 * 0.578 = 0.6758
③ 여성과 남성의 소득점유비율	-. 여성: 0.3242/ 0.422 = 0.6458 -. 남성: 0.6758/ 0.578 = 1.3571
④ 동등배분 소득지수(equally distributed income index)의 계산 (UNDP에서 지수로 사용한 1인당 국내총생산(real GDP per capita)의 최저값이 100달러이고 최고값이 40,000달러임)	-. [0.498(1.3571)-1 + 0.502(0.6458)-1]-1 = 0.8739 -. 0.8739*15,867 = 13,866 -. (13,866-100)/(40000-100) = 0.3952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산출된 서울시의 여성소득지수는 0.3952이다.

② 경북 소득지수 측정

<표 8>의 수치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북 여성의 소득지수는 다음 <표 10>과 같다.

6) 지방자치제도 실시이후 각 시도들이 1인당 GDP가 아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개념을 사용하였다.

<표 10> 경북 여성의 소득지수

구 분	지수산출과정
① 평균임금대비 여성임금과 남성임금의 비율(W): 평균임금대비 여성임금비율: 평균임금대비 남성임금비율:	$W=0.442(0.657) + 0.558(1) = 0.8484$ -. $0.657/0.8484 = 0.7744$ -. $1/0.8484 = 1.1787$
② 소득점유: {[(여성임금/평균임금)*여성경제활동인구비율] + [(남성임금/평균임금)*남성경제활동인구비율] = 1이 됨}	-. 여성: $0.7744 * 0.442 = 0.3423$ -. 남성: $1.1787 * 0.558 = 0.6577$
③ 여성과 남성의 소득점유비율	-. 여성: $0.3423/0.442 = 0.6887$ -. 남성: $0.6888/0.558 = 1.3076$
④ 동등배분 소득지수(equally distributed income index)의 계산(UNDP에서 지수로 사용한 1인당 국내총생산(real GDP per capita)의 최저값이 100달러이고 최고값이 40,000달러임)	-. $[0.503(1.3076)^{-1} + 0.497(0.6887)^{-1}]^{-1} = 0.9039$ -. $0.9039 * 18141 = 16,397$ -. $(16,397-100)/(40000-100) = 0.3612$

이런 과정을 거쳐 산출된 경북 여성의 소득지수는 0.3612이다.

③ 충북 소득점유지수 측정

<표 8>의 수치를 이용하여 산출한 충북 여성의 소득지수는 <표 11>과 같다.

<표 11> 충북 여성의 소득지수

구 분	지수산출과정
① 평균임금대비 여성임금과 남성임금의 비율(W): 평균임금대비 여성임금비율: 평균임금대비 남성임금비율:	$W=0.420(0.624) + 0.580(1) = 0.8421$ -. $0.624/0.8421 = 0.7410$ -. $1/0.8421 = 1.1875$
② 소득점유: {[(여성임금/평균임금)*여성경제활동인구비율] + [(남성임금/평균임금)*남성경제활동인구비율] = 1이 됨}	-. 여성: $0.7410 * 0.420 = 0.3112$ -. 남성: $1.1875 * 0.580 = 0.6888$
③ 여성과 남성의 소득점유비율	-. 여성: $0.3112/0.420 = 0.7410$ -. 남성: $0.6888/0.580 = 1.1875$
④ 동등배분 소득지수(equally distributed income index)의 계산(UNDP에서 지수로 사용한 1인당 국내총생산(real GDP per capita)의 최저값이 100달러이고 최고값이 40,000달러임)	-. $[0.503(1.1875)^{-1} + 0.497(0.7410)^{-1}]^{-1} = 0.9139$ -. $0.9139 * 14,250 = 14,921$ -. $(14,921-100)/(40000-100) = 0.3546$

충북의 경우는 3개 시도 중 가장 낮은 0.3546으로 산출되었다.

(3단계) GEM산출

여성권한지수는 앞에서 산출한 여성정치대표지수, 여성고위 행정관리직과 전문기술인 지수, 그리고 소득점유지수를 합쳐서 3으로 나눈 값이다.

<표 12> 각 시도의 GEM

지역	GEM
서울시	$1/3 * (0.3200 + 0.5944 + 0.3952) = 0.4365$
경북	$1/3 * (0.0981 + 0.5334 + 0.3612) = 0.3612$
충북	$1/3 * (0.1055 + 0.5281 + 0.3546) = 0.3294$

<표 13>에서 보듯이 3개 시도 중에서는 서울시, 경북, 충북 순으로 여성권한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정치참여지수, 고위행정관리직, 그리고 소득지수 등 모든 면에서 다른 도보다 지수가 높다. 경북의 경우는 낮은 여성정치참여지수가 전체적인 수치에 큰 영향을 주었다. 충북의 경우는 고위행정관리직 지수와 소득지수가 모두 낮은 것이 낮은 권한척도로 이어졌다.

2004년에 UNDP에서 산출한 한국의 GEM은 0.377로서 조사대상국 중 68위였는데(undp.org) 이와 비교해 보면 서울시의 경우는 한국수치보다 높고 경북과 충북은 그 보다 낮다.

2004년도의 GEM 상위순위인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의 경우 각각 0.908, 0.854, 0.847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국가들 중에서는 일본이 가장 높은 데 일본의 경우 2004년도 GEM순위는 조사대상국들 중 38위이고 척도의 수치는 0.531이다(undp.org).

IV. 정책적 함의

서울시의 GEM이 한국수치보다 높고 경북이나 충북에 비해 높다. 서울시의 수치를 이끈 것은 여성의회의원 수와 5급이상 공무원 수였다. 서울시의 이 값은 한국 내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아직 요원한 수치이다.

경북의 경우는 여성정치참여지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이 GEM을 끌어올리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이다.

충북의 경우는 여성정치참여지수가 경북에 비해서는 높지만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인 관점에서 높다고 볼 수 없고, 고위여성 행정관리직 및 전문기술직, 소득점유지수 등 모든 면에서 비교대상인 서울시나 경북에 비해 낮다.

여성권한척도의 산출에서 볼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첫째, 여성의 정치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531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여성참여제고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 이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여성고위 행정관리직 임명에 대한 압력이 중앙보다 약한 듯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대응도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것 같다. 이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중앙의 경우 4.4%에 달하고(행정자치부, 2002) 광역자치단체 중 시의 평균이 4%인데 비해 충북(2.60%)을 비롯한 강원(2.70%), 충남(2.70%), 전남(2.20%), 경북(2.70%), 경남(2.40%), 제주(2.10%) 등(김재기, 2004) 대부분의 도가 2%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성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6급 인적자원이 풍부해야 하는데, 지방의 경우는 특히 6급 여성인적 자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중앙부처 전체공무원 중 여성 6급 비율이 9.1%인데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7.9%이다(행자부, 2003).

중앙과 지방 모두 여성고위행정직의 비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으로 볼 때 여성관리직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의 연장이 필요해 보인다. 일명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로 지칭되는 이 제도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10%에 이르기까지 연도별 목표비율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목표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사부문의 여성관리직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2005년 기준으로 2%정도에 불과하다. 가장 최근에 나온 충북통계자료를 보면 충북내 사부문의 여성관리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충북, 2005)⁷⁾.

셋째, 여성소득점유지수도 마찬가지이다.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이 62-65%정도로서 매우 낮은 형편이며 여성경제활동참가비율도 남성에 비해 낮다.

이러한 남성대비 여성힘의 약현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타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995년도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는 성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5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국상황에서 GEM을 향상시키는데 적절한 사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자세한 것은 Ok-Soon Lee, 2004).

첫째, 법적 차별을 없앤다. 공사영역에서 성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틀의 완비가 중요

7) 이에 대한 문의결과 모든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공공부문보다 더 심각한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다. 성평등을 방해하는 제도적 장애요소들도 찾아내어 포괄적 정책개혁과 강력한 적극적 조치를 통해 제거해야 한다.

둘째, 사회 및 제도적 규범변화를 촉진한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역할에 근거한 행태적 및 제도적 규범이 공공영역에 대한 여성참여를 어렵게 한다. 가정에서의 여성과 남성간의 좀 더 평등한 책임배분이야말로 정치 및 경제영역에 있어서 여성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데 근본적인 것이다.

셋째, UN여성지위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핵심의사결정지위 점유율 30%를 제도화한다. 넷째, 여성교육에 대한 투자 등 여성기회향상에 필요한 주요 프로그램에 역점을 둔다. 다섯째, 여성의 경제적 및 정치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 목표를 둔다.

이러한 제안들로 볼 때, UNDP에서 GEM이 처방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선언하고는 있지만 이 수치가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여성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 처방의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V. 맺는말

매년 유엔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경제발전에 비해 사회적인 면에서의 권한 및 지위는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부진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부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여성가족부로 개칭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그 동안 여성정책을 기획하고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여왔다.

민주주의의 발전이나 참다운 참여가 여성과 남성간의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여성의 권한향상은 시급한 정책과제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육, 영양, 소득 등 인간개발 지표면에서는 여성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이것이 GEM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 서울시와 경북, 충북 여성의 사회적 권한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나를 측정하였다. 낮은 GEM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성의 정치참여지수이고 유일하게 국제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지표는 전문기술직 비율인데(스웨덴 50%, 노르웨이 49%, 오스트레일리아 55%, 일본 46%) 여기에는 보건의료전문가와 교육전문가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등 상대적으로 여성전문가비율이 높은 부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지방의 경우 여성의 힘이 약하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정책적 대응이 약하다 보니 지방정부의 정책적 반응이 소극적으로 되는 약한 여성권한의 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GEM을 높이기 위해 여성단체, 학계, 정계 등이 힘을 합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 논문의 한계는 중복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통계수치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중복은 공식적으로 여성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비해 다른 시도의 경우 그것을 따로이 산출하고 있지 않았다.

참고문헌

- 고속희. (2000). 충북 여성의 사회적 권한 증대방안. 박제창편,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293-316
- 김미경. (1999). 차별적 여성고용의 위기와 정부역할의 모색. 한국정책학보. 8(1):273-292.
- 김재기. (2004).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노동부. (1997). '97노동백서.
- 노동부. (1999). 영세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 노동부. (1999).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 박연호. (1998). 현대인간관계론-조직행동과 대인관계-. 서울: 박영사.
- 박우순. (1996). 현대조직론. 서울: 법문사.
- 여성부. (2004). 여성인적자원개발 혁신방안연구.
- 여성특별위원회. (1999). 1999여성백서.
- 윤우곤. (1997). 행정행태론. 서울: 법문사.
- 이창원, 최창현. (1997). 새조직론. 서울: 대영문화사.
- 전국경제인연합회. (1997). 한국경제연감.
- 조선일보. 1999. 1. 2; 1999. 7. 8; 1999. 9. 17.
- 중앙일보. 2000. 1. 13.
- 충청북도. (1997), 제37회 충북통계연보.
- 충청북도. (1999). 1999충북여성통계.
- 충청북도. (2005). 2005충북여성통계.
-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1999). 1999년 주민등록인구통계

- 통계청. (1997). 한국통계연감.
- 통계청. (1998). 국제통계연감 1998.
- 통계청. (1999). 경제활동인구연보.
- 한국일보. 2005. 8. 11
- 행정자치부. (1999). 행정자치부통계연보.
- 행정자치부. (2000). 행정자치부통계연보.
- 행정자치부. (2003). 여성과 공직 2002..
- 행정자치부. (2005). 행정자치부통계연보.
- King, Cheryl Simrell. (1995). Sex-Role Identity and Decision Styles: How Gender helps explains the Paucity of women at the Top. in Georgia Duerst-Lahti & Rita Mae Kelly(eds.). *Gender Power, Leadership, and Governmanc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Duerst-Lahti, Georgia & Rita Mae Kelly. (1995). On Governance, Leadership, and Gender. in Georgia Duerst-Lahti & Rita Mae Kelly(ed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Guy, Mary E. (1994). Organizational Archotecture, Gender and Women's Careers. *Review of Public Personal Administration*. 14(2): 79-90.
- Karl, Marilee. (1995). *Women and Empowerment -Participation and Decision Making-*. London: Zed Book LTD.
- Naff, Katherine C. (1994). Through Glass Ceiling: Prospects the Advancement of Women in the Federal Civil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4(6): 507-514
- Ok-soon, Lee. (2004). Query: Republic of Korea-Policy options to improve the GEM Ranking. <http://hdr.undp.org>
- Randall, Vicky. (1987). *Women and Politic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amerius, Karin L. (1995). Sex, Gender, and Leadership in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Georgia Duerst-Lahti & Rita Mae Kelly(eds.). *Gender Power, Leadership, and Governmanc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The Corporate state: A Women's CEO and Senior Management Summit. *The CPA*

Journal. 1998. november: 9.

UN. (1993). *Human Development Report 1993*.

UNDP. (1995). *Human Development Report 1995*.

UNDP. (1997). *Human Development Report 1996*.

UNDP. (2005). *Human Development Report 2004*.

www.undp.org/unifem/gender.htm

www.undp.org/hdro

www.undp.org/hdro/anatools.htm

www.mogef.go.kr

여성의 사회권과 아내/어머니 지위
- 시민권에 관한 여성주의적 고찰

황 정 미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의 사회권과 아내/어머니 지위

- 시민권에 관한 여성주의적 고찰

황 정 미 (한국여성개발원)

1. 도입 : ‘생산적 복지’와 사회권

1990년대 말 한국사회에 닥쳐온 경제위기는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이 확대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외환위기에 이은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자 한국의 중산층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는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표현되는 사회복지 정책 확대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는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개편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이후 ‘선 성장 후 분배’의 기치아래 권위주의적 개발을 시도하였던 한국에 본격적인 복지정책이 도입되는 시점(timing)이 공교롭게도 경제의 세계화 물결이 밀어닥치는 시기였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와중에서 이른바 선진 복지국가들이 사회복지의 축소지향적 재편을 단행하는 추세 속에서 한국은 오히려 ‘소폭확대’라는 역코스를 선택했으며, 그것도 외환위기의 힘든 상황 속에서 추진된 것이다(홍경준·송호근 2003). 외환위기로 국가의 경제관리 능력이 최저점에 이르렀을 때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최고점에 이르는 딜레마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복지의 확대를 병행추진할 수밖에 없었고(이혜경 2004: 13) 이러한 정책 방향이 ‘생산적 복지’의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1990년에는 사회복지비(social expenditure) 규모가 GDP 4.52%에 불과했던 것이 1997년 6.65%, 1998년 11.09%로 급증한 사실¹⁾에서도 이러한 정책의 전환이 나타난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확대는 한국에서 국가와 젠더의 관계를 새롭게 사고해야 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과거 경제개발과정에서 권위주의 국가는 여성을 국가발전 전략에 동원하는 동시에 가부장적 가치관에 의해 여성을 배제하고 폄하하는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었다. 여성은 차별받는 저임금 노동자로서, 또 가정에서 재생산을 책임지는 무급의 보살핌 노동자로서 경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제성장에 기여하였지만 그러한 역할은 성장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취업여부를 막론하고 여성의 삶은 사적인 가족생활에 귀속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여성의 노동권과 사회권은 국가 정책의 관심사가 되지 못하였다. ‘승인 없는 동원(mobilization without recogni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개발국가의 여성배제적 성격은 그러나 1980년대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시작으로 여성의 지위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법률이 제정되고 또 여성정책 전담기구로써 1998년 여성특별위원회, 2001년 여성부가 설립된 것은 민주화 운동에 동참해온 여성운동의 성과물이었다. 여성에 대한 차별해소와 인권보장, 그리고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을 목표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여성정책의 핵심과제였다.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을 확립할 국가의 책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또 여성정책을 수행할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으로 여성들이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은 한국 여성정책의 큰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여성정책의 확대과정이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된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대다수 여성들의 삶의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성주류화를 지향하는 여성정책이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 하에 진행된 국가복지의 확대과정, 그리고 여성정책의 도입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방향이 교차하는 지점은 바로 ‘여성의 사회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최소한의 경제적 복리와 보호의 권리 더 나아가 사회적 자산을 동등하게 향유하고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문화생활을 할 권리’(김선민 외 2002; 김영란 2001)로 정의된다. 사회권에는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권리, 즉 생존권의 보장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곧 사회구성원임을 인정하는 온전한 성원권(full membership)의 두 차원이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보호의 제공’과 ‘성원권의 인정’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이 존재하며, 보호를 제공받는 약자에 대해서는 언제나 요보호자 혹은 의존자라는 도덕적 낙인이 뒤따르는 경우도 많다.

전후 서구 복지국가 형성기에 여성은 단지 ‘개인’이자 시민이 아니라, 남성가장에 의존하는 피부양자의 지위로서 복지정책의 대상에 편입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지국가는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을 전제하고 가장인 남성과 피부양자인 여성의 지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하면서 복지 패러다임은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 복지국가 개혁에 관한 새로운 토론을 유발한 중요한 두 가지 과정은 첫째 인구구조와 가족관계의 변화, 둘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대이다.(Boje & Leira 2000, Esping-Anderson 2002)

인구구조의 변화, 여성의 취업 증대라는 객관적 현실의 변화 속에서 복지국가가 젠더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는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최근 한국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지금까지 사적 영역에 맡겨져 있었던 출산과 양육, 보살핌 노동에 대해 국가의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와중에서 급격한 이혼율의 증가와 출산율의 하락, 다양한 가족제도의 등장은 국가-시장-가족 간의 역할분담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정책 레짐 안에는 여성과 남성의 특정한 성별 분업을 전제로 ‘젠더 계약(gender contract)’을 내포되어 있고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구조재편 과정에서 새로운 젠더계약이 등장하고 있다는 논의(Esping-Andersen 2002)는 서구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것이다. 젠더 계약의 내용은 남성과 여성이 상이한 역할을 분담하는가 혹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가(성별분업 여부), 그러한 역할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인정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남성이 노동시장에 나가 생계부양을 하고 여성은 사적 가정에서 무급의 보살핌 노동을 수행하는 전통적 성별 분업에 기초한 ‘남성부양자 모델’, 성별 분업이 지속되더라도 여성의 보살핌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물질적인 지원정책(모성수당, 아동수당 등)이 강화되는 ‘성역할 분리 모델’, 성별 분업이 약화되면서 남녀 모두가 유급 노동과 무급의 보살핌을 함께 분담하는 ‘개별 부양자-케어러(individual earner-carer)’ 모델 등이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Sainsbury 1999).

정책에 내포되어 있는 젠더계약 혹은 성역할 모델이 무엇인가에 따라 여성의 사회권에 대한 인식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여성의 사회권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가족 내부의 지위 양쪽으로부터 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의 복지 수급권은 단지 기술적인 제도설계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젠더 계약, 나아가 젠더 정치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이고 정책적인 복지수급권은 여성의 사회권에 관한 이론적 성찰, 다시 말해 시민권의 사회학(sociology of citizenship)을 동반할 때 보다 안정적으로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여성의 사회권을 여성의 가족지위와 연관시켜 이론적으로 폭넓게 재해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여성의 사회권 개념은 좁은 의미의 복지수급권, 여성의 생존권과 노동권, 여성빈곤의 해결방안 등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본주의적 세계화와 복지국가 개혁이 여성의 시민권을 어떻게 새롭게 구조화하고 있는가를 폭넓게 고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2. 시민권 이론의 검토 - Marshall의 시민권에 대한 비판

(1) 시민권의 보편성과 젠더

마샬(T.H. Marshall) 이후 시민권(citizenship)은 공민권(civil rights), 정치권(political rights), 사회권(social rights)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어 논의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공민권은 언론과 사상의 자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계약을 맺을 권리 등을 의미하며, 정치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리킨다. 역사적으로 가장 나중인 20세기에 확립된 사회권은 자유권이나 선거권과는 뚜렷하게 구분되어 흔히 경제권이나 노동권, 빈곤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생존권 등을 의미하게 되었다.

마샬의 시민권 개념은 시민권에 관한 이후의 논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민권이 공민권(18세기), 정치권(19세기), 사회권(20세기)의 순서로 누적적으로 확대되어왔다는 마샬의 주장은 보편적으로 수용되어 왔다. 시민권의 개념을 법적인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자본주의 확대와 노동계급의 현실이라는 역사적 시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한 것은 마샬의 뛰어난 통찰력이자 공헌이다. 그러나 남성노동자의 삶을 전제하는 이 개념은 여성의 사회권을 설명하기에는 결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여성학자들의 비판을 살펴보기에 앞서, 시민권의 세 가지 하위개념 간의 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사회권을 강조할 때 복지수급권을 강조하게 되지만, 그러나 사회권을 공민권 및 정치권으로부터 따로 떼어내어 논의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로셰(Roche 1992)는 전후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을 제공한 시민권의 지배적 패러다임, 곧 마샬, 티트무스(Titmuss), 베버리지(Beveridge) 등이 주장한 시민권 개념이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른바 신우파의 복지국가 비판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로셰는, 첫째 사회권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사회권이 정치권과 분리되어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이럴 경우 복지를 요구하는 사회권은 의무를 간과하고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형태를 띠게 되어 그 도덕성을 약화시키며 신우파는 바로 이 지점을 강력하게 공격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나 관료들이 상당한 권력을 복지수혜자들에게 행사하게 됨으로써 시민들의 시민적, 민주적이고 정치적인 지위와 권리는 사회권의 실행과정에서 간과되거나 위협받을 수도 있다.

더 근본적인 비판은 두 번째 지적이다. 사회권을 강조할 경우 시민권 개념을 탈정치화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로셰에 따르면 마샬은 복지국가를 공민권이나 민주주의로부터 분리하는 경향이 있으며, 복지수혜를 자유권이나 정치적 참여권으로부터 분리한다고 본다.

로셰의 비판의 비판을 정리하면, 복지국가의 이론적 설계자들은 사회권이 갖고 있는 독자

적인 차원을 부각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지만, 사회권이 다른 시민권이나 정치권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의무를 간과하고 사회권 자체를 ‘참여’와 같은 민주주의적 특성과 분리함으로써 이후 다가올 사회권 개념에 대한 도전을 예견하지 못하며 신우과의 공격 앞에 취약점을 드러내게 된다고 로쉐는 진단한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시민권의 획득은 공민권-정치권-사회권의 순서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여성의 경우 시민권의 세 측면이 반드시 상호보완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 (O’connor, Orloff & Shaver 1999: 160). 월비는 시민권이 모든 구성원에게 동시에 전면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상이한 집단들이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양상으로 시민권을 획득하여 왔다고 강조한다(Walby 1997: 171~172). 보편성과 포괄성이 아니라, 선택성과 비대칭성이 오히려 시민권의 형성과정의 특징인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더라도 서구 국가들에서는 남성의 정치권이 여성보다 앞서 주어졌지만, 한국을 포함한 후발 국가들에서는 식민지로부터의 독립과 더불어 여성과 남성에게 동시에 참정권이 주어진 예가 많다. 또한 서구국가에서도 여성들은 ‘투표할 권리’를 ‘이혼할 권리’보다 먼저 획득한 사례가 많다. 이처럼 여성에게는 재산권이나 자유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는 마샬의 테제에 정면으로 모순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 사회권과 정치권, 공민권이 순차적 누적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세 가지 시민권 간의 관계 자체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Lister 2000: 38). 이처럼 시민권 개념은 그 자체가 남성들의 근대경험을 반영하고 있으며 ‘보편적 시민권’을 표방하지만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를 배제하는 메커니즘을 내포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여성의 사회권이 시민권의 다른 측면, 곧 공민권 및 정치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각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여성운동의 대응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서구에서는 이른바 여성운동의 첫 번째 물결(First wave feminism)에서는 여성의 재산권, 직업과 교육의 기회 등 남성과 동등한 시민적 권리를 요구하였으며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는 참정권을 요구하는 운동이 유럽 각지에서 격렬하게 분출되었다. 그런데 여성의 공민권은 아내의 권리를 남편의 권리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는 가족법의 개정 없이는 확립될 수 없었다. 아내의 권리는 남편의 권리에 속한 것으로써 부부의 권리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라는 ‘coverture’의 개념이 오랫동안 고수되었으며 기혼여성이 남편과 독자적인 재산권의 행사, 이혼할 권리 등을 획득하기 위해 지난한 법정 투쟁을 거쳐야 하였다.(이남희 2002) 남성의 공민권이 국가 및 공권력 앞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다면, 여성의 공민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더불어 가부장적 결혼제도로부터의 자유 또한 요청하는 것이었다.

가부장적 결혼제도로부터의 자율성은 재산권이나 소유권 뿐 아니라 몸과 성의 자율성 문제를 크게 부각시킨다. 아내의 몸과 성이 가부장적 결혼제도를 통해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사실은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에서 크게 부각되었다. 법 체계 안에 여성의 재산권과 참정권이 확립된 이후에도 여성의 성적 권리는 여전히 명확히 인식되지 않았으며,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강간과 성폭력에 관한 법의 개혁, 특히 아내강간 문제를 제기하여 여성의 성적 권리를 가시화하고자 하였다. (조국 2000)

그렇다면 여성의 사회권 역시 여성과 복지국가 간의 관계 뿐 아니라 여성-가족-복지국가를 연결하는 복합적인 차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여성의 가족 내 지위, 아내로서의 권리나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어떻게 정의되고 또 보장받고 있는가는 여성의 사회권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2) ‘완전한 성원권(full membership)’과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권은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보호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한 성원권(full membership)의 부여에 이르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시민권은 경제적 복지와 안전의 권리로부터 사회의 모든 유산을 온전히 공유하고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문명화된 삶을 살 권리까지 넓은 범위를 포괄하며, 이에 연관된 제도는 교육체제와 사회 서비스이다.(Marshall 1992: 8) 따라서 사회권은 경제적 생존권의 범위를 넘어서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권리이다. 경제적 빈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빈곤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메커니즘이 사회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사회권이 확립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마셜의 이해는 매우 흥미롭다. 보호를 구하는 ‘객체’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 상황이야말로 사회권의 핵심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마셜은 잘 보여준다.

“사회권의 근원은 지역공동체에의 성원권(membership)이다. 이러한 근원은 구빈법과 임금규제 체계로 보완되거나 전진적으로 대체되었다. … 구빈법은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시민 권리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그와는 다른 대안적인 것으로 취급하였다. 빈민들의 요구는 그들이 진정한 시민이 되기를 포기하는 한 충족될 수 있었던 것이다. … 공장법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최고의 시민인 성인남성에게 직접 부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 … 보호는 여성과 아동에게 국한되었는데, 여성은 그들이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았던 것이다. … 19세기 말이면 이러한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었고 공장법은 사회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Marshall 1992: 14~15)

초기 구빈법과 공장법은 시민이 아니라 자격 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를 제공하였으며 사회적 보호를 받는 한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19세기 말부터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20세기 복지국가에 이르러서는 사회적 보호를 시민의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보호의 객체가 권리의 주체로 역전되는 것은 노동자들 간의 강한 사회적 연대(solidarity)가 뒷받침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대의 기초는 노동에의 참여이며, 시장에의 의존, 유급 노동에의 의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가 사회권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다.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 1990)의 탈상품화 개념은 '평균적인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전업주부, 조직화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 일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인 등 인구의 상당부분을 배제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를 분석대상으로 삼지만, 사적 영역에서 수행되는 가사노동이나 사적 복지 등 가족 영역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성들의 사회권은 탈상품화 뿐 아니라 유급노동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독자적인 가구를 형성할 수 있는 권리를 필요로 한다. (김영란 2001; Orloff 1993)

에스핑-안데르센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복지국가가 가족에 대한 케어를 어느 정도 지원하고 분담하는가를 분석하고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 개념을 제시한다. 탈가족화의 지표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가족에 대한 서비스의 전반적인 지원 정도, 둘째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가족수당, 세금공제 등), 셋째 공적인 아동케어의 제도화 정도(특히 3세 이하 아동을 위한 공보육), 넷째 노인을 위한 케어 제공의 정도이다. (Esping-Andersen, 1999: 60~61)

자녀 양육이나 노인부양 등의 보살핌 노동이 사적 가정에서 아내나 어머니, 딸들에 의해 무급노동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정책으로서 사회적 케어(social care)가 제공된다면 여성들의 사회권은 훨씬 넓은 범위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올로프(Orloff 1993)의 표현을 빌어본다면, 탈가족화는 국가정책을 통해 결혼 관계 내의 여성권력이 강화되거나, 여성이 이끌어가는 가족(여성가장가족)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들이 남성생계부양자 가족, 가부장적 결혼으로부터 벗어나서 생활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양육, 노약자와 장애인의 보호 등을 공적 복지에 의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면, 여성이 부담해야 했던 보살핌 노동의 부담과 가족 내의 성별 분업을 강제하는 가부장제의 압력은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보살핌이 제도화될수록 여성의 취업이 유리

해결 것이며 자신의 독자적 노동시장 지위를 근거로 여성들은 탈상품화된 사회권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이 양질의 노동자로서 노동시장에 편입되면 될수록 보호에 수반하는 낙인도 완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탈가족화가 상당히 제도화된 복지국가에서 여성들은 사회권의 본래적 의미인 ‘완전한 성원권’을 인정받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성원권은 여성들의 이전보다 개선된 ‘노동권’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보살핌을 수행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에서 나오는 것인가? 탈가족화는 말 그대로 여성이 가족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노동권을 성취하고 ‘탈상품화’의 혜택을 누리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가?

실제로 탈가족화는 전부 혹은 전무의 문제가 아니라 유급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양립하기 위한 다양한 협상과 선택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탈가족화를 지향하는 가족지원정책이 실행된다고 하여 여성의 가족지위가 여성의 사회권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어떤 면에서는 공보육과 가족서비스가 확대된다면 가족을 보살피는 여성의 부담이 완화되고 여성들이 가족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사회적 수준에서 보자면 여성이 보살핌 노동에서 벗어나 유급노동자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탈가족화는 케어에 대한 국가와 가족의 분담, 시장에 의한 탈가족화와 국가정책에 의한 탈가족화의 조정, 남성과 여성의 보살핌 노동 분담 등 가족과 노동을 매개하는 다양한 협상과 갈등의 지점을 더욱 첨예하게 드러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사회권은 좁은 의미의 복지수급권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권 및 공민권의 관계 속에서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권은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특정 집단을 통합 혹은 배제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남성의 사회권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노동권에 근거하는 것과 달리, 여성의 사회권은 가족 내 지위에 의해 크게 규정받는다. 여성의 사회권과 가족지위의 관계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여성의 시민권 획득 그 자체, 또 여성이 남성과는 차별적인 의미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데에는 아내 혹은 어머니로서의 가족지위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둘째, 여성의 가족 지위는 여성을 시민의 지위로부터 완전히 배제하거나 완전히 통합하는 것과는 다른, 이른바 ‘배제적 통합’의 형태를 띤다. 여성의 시민권은 가족 내 의존적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남성과는 차별화된 내용을 갖는다.

셋째, 여성의 차이에 대한 문화적 신화(cultural mythology)와 아내 및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규범은 여성의 사회권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파생적 권리와 독자적 권리 - 국민연금의 사례

(1) 연금수급권과 젠더

사회권 개념 안에는 ‘보호의 제공’과 ‘완전한 성원권’ 간의 긴장이 존재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러한 긴장은 남성보다 첨예하다. 여성들은 아내이자 어머니라는 가족 내 지위로 인해 무급의 보살핌 노동을 담당해야 하고 그로 인해 유급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머물러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은 여성의 사회권을 두 가지 차원에서 제약한다. 먼저 여성은 저임금의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로서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안정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며 완전한 성원권에 제약을 받게 된다.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취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취약한 노동자로서 여성들은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을 위험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 이는 달리 말해 사회의 완전한 성원으로써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로, 독자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여성들은 결국 가족 내의 피부양자 지위를 근거로, 즉 남성 노동자의 배우자로서 복지제도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 여성들은 개별적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피부양자이나 피보호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복지수급권의 차원에서는 여성들이 독자적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혹은 남성 배우자에게서 파생된 권리에 머물러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여성의 사회권이 구체적인 정책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고찰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연금제도에서의 파생수급권과 개별수급권 논의를 살펴보겠다.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에서 출발하지만 석유파동(oil shock)으로 실시가 연기되었고, 1988년 1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²⁾ 소규모 사업체의 취업자와 자영업자까지 모두 포함하는 ‘전(全)국민 연금 시대’가 열린 것은 1999년이다. 물론 ‘전국민 연금시대’라는 표현이 말 그대로 전 국민이 연금혜택을 받게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취업자와 자영업자,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석재은(2003)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령 인구 중 86%, 그리고 근로연령층인 18~59세 인구 중 61%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한다.³⁾

2) 국민연금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그런데 특정한 직역, 즉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별도의 직역연금에 소속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직역연금 자료도 고찰하였다. 단 군인연금은 여성가입자가 거의 없으므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3) 연금 사각지대의 범위가 넓은 것은 우선 한국의 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때문이며 정상적인 노령연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1인 1연금'이 아니라 '1 소득자 1 연금'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는 노후의 소득보장에서 두 가지 제도적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첫째, 연금 수급 여부가 청장년기의 취업과 관련이 있다. 둘째, 연금 수급의 수준이 청·장년기 취업의 질과 관련이 있다. 국민연금의 연금산정은 연금 가입기간, 가입한 기간 동안의 소득 수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급여 산정에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피보험자에게 소득재분배를 하는 효과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입기간과 소득이 연금급여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엄규숙 2002: 69) 결국 청·장년기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급여 수준이 노후 연금의 수준에 상당 부분 반영되는 것이다.

한국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남성과 뚜렷한 격차가 있다는 사실은 결국 노후 보장에서 성별 격차를 예상하게 한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에 머물러 있어 노동시장에 전혀 진입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상당 수 존재한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우에도 비정규직 취업, 결혼·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고용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연금수급자격이 요구하는 지속적 가입기간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는데⁴⁾ 이러한 노동시장 내 지위의 취약성은 결과적으로 노후 보장의 질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

연금제도는 설계상 개인 단위의 가입과 수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연금수급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부양가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갖고 있다. 연금제도에 지불한 기여에 기반하여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권리를 개별적 직접수급권(direct right)이라고 한다면, 연금수급자의 피부양자라는 지위를 기초로 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수급권을 파생 수급권(derived right)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직접수급권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며, 여성들의 취업이 늘어날수록 직접수급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반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가 클수록 여성들은 노후보장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한다. 연금제도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저임금 직종에서 장기 근속한 여성들은 상당한 혜택을 입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성들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고용불안정과 경력단절로 인해 이러한 혜택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금 수급자는 2008년부터 나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여성의 연금가입 실태, 그리고 여성의 가족지위가 연금수급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추고 그 젠더적 함의를 고찰한다. 물론 이러한 논의도 연금제도의 미성숙을 전제로 한 부분적 해석이라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4) 2004년 기준으로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임금의 63.2%에 불과하다. 대졸여성의 경우에도 남녀임금비는 67.8%에 그치며, 고용의 질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10년 이상 경력의 대졸여성 평균임금도 남성의 80.2%로 상당한 격차를 보여준다. (여성통계연보 2005)

과생 수급권의 젠더적 함의에 대해서는 상이한 해석이 존재하고 있다. 과생 수급권은 그 자체가 남성 생계부양자와 여성 피부양자의 관계, 곧 전통적 성별분업에 기초한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을 전제한다.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들도 연금수급 자격을 획득한 시점에서 독자 수급권과 과생수급권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하고, 과생수급권이 유리하다는 것은 여성들의 독자적 취업경력이 그만큼 평가절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과생 수급권은 남성중심의 가족제도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으로 생계를 영위할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는 정책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과생 수급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 연금 혜택을 받는 개인(주로 여성)의 관점에서는 급여의 수준이 배우자(주로 남성)의 기여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할지라도, 권리의 근거가 단지 피부양자 지위가 아니라 배우자로서의 무급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직접적 권리인 개별적 수급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김수완 2002). 이러한 입장은 연금수급권을 포함한 사회복지 정책의 모델을 ‘개인 모델’(individual model)과 ‘남성부양자 모델’(male-breadwinner model)로 나누는 이분법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며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국가의 양상들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시각을 취한다. 과생수급권은 여성의 무급 보살핌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recognition)이라는 차원에서 ‘보살핌 제공자’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권리이며 국가에 따라 실질적으로 급여 수준이 상응하여 여성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이혼 시의 연금 분할⁵⁾이 가능하고 유족연금에서도 배우자의 결혼지위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완화된다면⁶⁾, 과생수급권은 여성의 가족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문제는 여성의 개별 수급권과 과생 수급권이 충돌한다는 것이다. 과생 수급권이 유리할 수록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은 약해지며 전통적인 성별 분업이 고착화될 위험이 커진다. 반면 과생수급권이 약화된다면 노동시장에서 경쟁할 만한 인적자본이 취약한 여성들은 연금수혜에서 더욱 멀어질 것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와 가족 내 지위 중 어느 것을 수급권의 기반으로 할 것인가는 또한 여성 내부의 다양성 문제와도 연관된다.

연금 수급의 주체인 여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보살핌 전담자 혹은 유급노동 전담자로 살아가는 여성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여성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보살핌 노동과 유급노동을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수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가사노동과 유급노동 중 어느 한 쪽을 여성의 몫으로 고정시키기 보다는, 양자를 모두 수행하는 데서 비롯되는 연금제도 상의 불이익을 최

5) 연금 분할의 젠더적 의미도 논자에 따라 달리 파악된다. 김태홍(200)과 김수완(2003)은 연금 분할을 독자적 연금수급권으로 해석하는 반면, 정재훈(2005)은 이것을 과생적 권리로 보고 있다.

6)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할 경우 연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되지만, 프랑스에서는 재혼 후에도 계속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보상해주는 연금 크레딧(credit) 제도가 한 예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연금제도의 젠더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매우 복잡적이다. 이 글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가 연금수급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금수급권에서 성별에 따른 명확한 격차(gender gap)가 존재하는가를 중심으로 한국의 연금 실태를 간략히 고찰하고, 여성의 가족지위가 사회정책의 수혜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2) 연금제도 실태와 여성의 가족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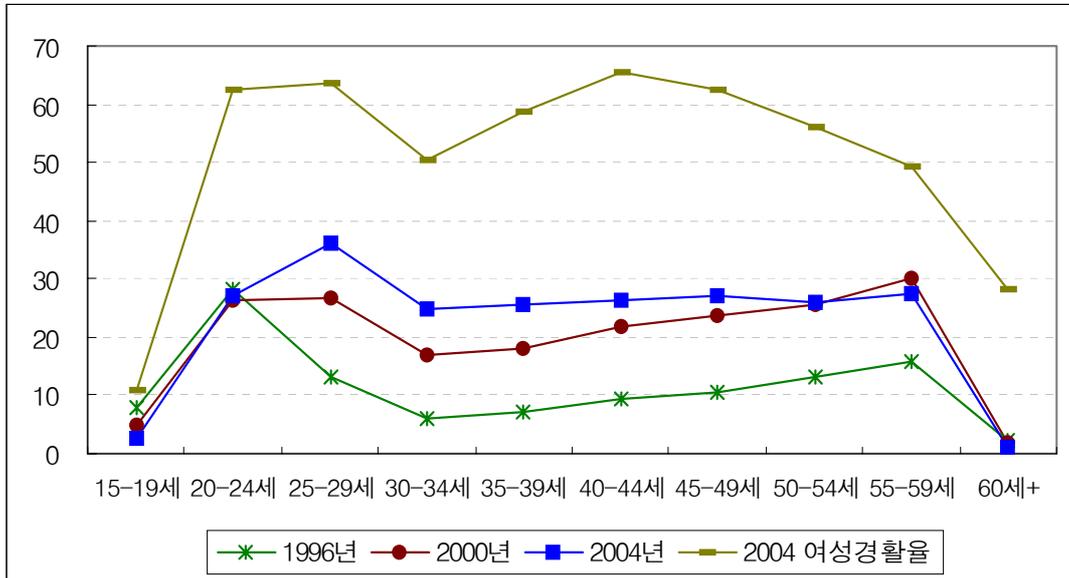
한국의 연금 실태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여성의 가입률이 매우 낮으며 노령연금 수령자 중 남성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앞서 논의한 대로 노동시장 내부의 성차별적 구조가 연금의 구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표 1>는 국민연금, 직역연금인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의 가입자를 성별로 보여주는데, 3개 연금을 모두 합한 여성의 가입율은 1995년 13.1%에 불과했던 것이 2004년에는 32.7%로 2.5배 가량 크게 늘어났다. 남성의 연금가입자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37.4%에서 61.8%로 1.6배 증가하는데 그쳐, 증가율만 비교한다면 여성의 연금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10명중 7명 가량은 연금에 가입해 있지 않으며 남성과의 격차도 현격하다. 이처럼 낮은 가입율은 여성의 취업이 저조하며 또한 연금에 가입할 정도의 안정된 일자리에 여성이 진출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을 보더라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에 집중되어 있다.

<표 1> 성별 연금가입자 현황 추이

	1995년	2000년	2004년	
여성	국민연금 가입자	1957636	4877186	5918266
	공무원연금 가입자	257784	283885	343921
	사학연금 가입자	60816	78042	94182
	가입자 합계 (A)	2276236	5239113	6356369
	15세 이상 여성인구 (B)	17322927	18365977	19408771
	구성비 (A/B)	13.1%	28.5%	32.7%
남성	국민연금 가입자	5538987	11332395	11151951
	공무원연금 가입자	700098	625270	620672
	사학연금 가입자	120312	132822	135744
	가입자 합계 (C)	6359397	12090487	11908367
	15세 이상 남성인구 (D)	16995279	17980556	19255955
	구성비 (C/D)	37.4%	67.2%	61.8%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5>

그림 1. 연령별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2004 국민연금통계연보>
 통계청 <인구주택센서스 조사> 각 년도, <추계인구> 각 년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여성들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나타난다. 먼저 지적할 것은 30대 초반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이 연금가입자 비율의 감소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경력 단절이 현재의 소득 뿐 아니라 노후의 소득 보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잘 드러난다. 또한 경제활동 참가자에 비해 연금가입자가 훨씬 적다. 경활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20대 후반으로 60%를 넘어서지만 같은 연령층의 연금가입비율은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1인 이상의 전 사업체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성들의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것은 경활율 곡선에서 나타나는 M자형 곡선의 두 번째 피크(40~45세)가 연금가입을 곡선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점이다. 30대 후반 이상의 중장년층 여성들은 일을 하면서도 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못하는) 비율이 젊은 여성보다 훨씬 높다는 의미이다. 또한 30대 초반 연금가입자격을 상실한 여성들은 나중에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더라도 연금가입 자격을 다시 획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로는 두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40대 후반 이상의 여성들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영세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 일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연금의 가입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그만큼 클 것이다. 저임금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경우 국

민연금에 가입하면 자신의 급여에서도 일정액을 각출되어 당장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한마디로 고연령층 여성들의 고용의 질이 낮기 때문에 연금의 사각지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력단절로 인한 시간적 요인이다. 한번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단절이 생겼다면, 재취업할 때 다시 가입한다 하더라도 (여성의 정년연령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최소 10년 이상이라는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진다. 여성재취업자들은 하향취업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안정적 고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현재의 여성 연금가입실태를 보면 여성의 생애주기가 연금제도에서 적절히 고려되지 않으며 출산 양육기의 경력단절로 인해 연금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를 보완하는 장치가 거의 없다.⁷⁾ 결국 생산노동과 더불어 재생산 노동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여성들, 가족보살핌 노동을 위해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여성들에게 연금제도는 페널티를 주고 있는 셈이다.

앞에서 논의한 여성의 개별 수급권과 파생 수급권도 중요한 쟁점이다. <표 2>는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성별 구성을 나타낸 것인데, 사실 여성의 연금수혜자격이 독자적인가 아니면 파생적인가를 논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전체 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은 30%에 불과하며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 중 여성비율은 6.8%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지적한 연금제도의 미성숙 문제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연금수급에서의 성별 격차는 매우 크다.

둘째, 파생적 수급권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의 수급자 중 대다수가 여성이다. <표 2>에 나타났듯이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의 87.5%,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자는 98.7%가 여성이다. 가급연금⁸⁾ 대상자도 대다수(78.9%)가 여성이다. 노령연금 수급자보다는 가급연금 대상자인 여성이 수적으로도 더 많다. 편의상 노령연금을 독자적 수급권, 가급연금과 유족연금을 파생 수급권이라고 본다면, 현재 수급자 중에는 파생 수급권에 의해 연금을 받는 여성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7) 현재 국회에서 출산·육아에 대한 크레딧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본 고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8) 가급연금(additional pension)은 연금수급자에게 배우자,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가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이다. 배우자가 받는 가급연금액은 1년 단위로 2005년 현재 190,760원, 자녀와 부모는 127,170원이다. 월 단위로 15,896원에 불과해 생활보장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2> 60세 이상 공적 연금 수급자 중 여성 비율 (2004)

(단위: 명, %)

		전체(A)	여성(B)	여성비율 (B/A)	B/60세 이상 여성인구(%)
국민연금	노령연금	1156098	347611	30.1	8.8
	가급연금* (노령연금)	483289	381401	78.9	9.6
	유족연금	80650	70591	87.5	1.8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126051	8570	6.8	0.2
	유족연금	11362	11215	98.7	0.3
합계		1374161	437987	31.9	11.0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0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 통계연보 2004>

*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장애, 유족연금 제외)에서 가급연금 대상자 중 60세 이상인 사람만 포함.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공무원연금의 퇴직 및 유족연금 수급자중 60세 이상인 사람만 포함하여 계산하였음.

한국 연금제도의 젠더적 성격을 잠정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연금 가입 자격은 성별에 무관하게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가입 자격 및 수급액이 정해진다. 여성이 무급 재생산 노동을 담당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력중단을 보상하는 제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론 육아휴직을 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여기에도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첫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양질의 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전체 여성 중 소수에 불과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⁹⁾ 둘째, 이 규정은 육아휴직중인 여성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 그 보험료를 직장이나 국가에서 지원받을 가능성도 보여주지 않는다. 여성이 나중이라도 본인이 부담해서 보험료를 내든지 아니면 노후에 보험급여 수준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정재훈 2005: 45-6).

연금 수급의 양상을 보면 성별에 따라 개별수급권과 파생수급권의 명확한 분리가 나타난다. 즉, 파생수급권에 해당하는 유족연금과 가급연금 대상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인 반면, 독자수급권에 해당하는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은 30%에 불과하다. 이처럼 여성의 연금수급권이 파생적 권리에 치우쳐 있다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채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수급권자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수급액의 수준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사실이다. 2004년 현재 유족연금을 받는 여성의 평균 수급액은 월 169,308원에 불과하여(국민연금관리공단, 2004)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배우자에 대한 가급연금은 2005년 기준으로 월 16,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생활보장과는 무관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소

9) 2003년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총 6,816명에 불과하며 그 중 여성은 6,712명이다.

액이나마 가급연금을 받고 있는 여성은 60세 이상 노령 여성 중 10%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는 여성이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주부임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성들의 취업 동기를 약화시킴으로써 전업주부로 묶어둘 만한 제도적 유인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연금 제도가 ‘남성 노동자’를 모델로 설계되어 있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남성에게 의존하는 피부양자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범위나 수급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남성 가장에게 의존하는 피부양자의 생활보장은 아직도 공적 사회보장체계보다는 사적 가족에게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고, 따라서 한국의 연금제도는 ‘약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파생수급권을 보다 독자적인 권리로 강화하려는 제도 개선은 부분적으로 진전되었다. 1998년부터 이혼 시 분할연금제도가 신설되어 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60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지만, 분할연금을 받던 사람이 다른 배우자를 만나 재혼할 경우 수급권은 사라진다.

연금제도의 젠더적 성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와 제도 적용의 현실 및 제도적 성숙도 등이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 글에서는 현재의 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실태만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의 연금 가입 및 수급 현황을 보면 성별에 따라 커버리지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여성들은 가입율이나 수급율에서 남성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연금가입자격이 유급노동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며 여성들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낮은 것은 그대로 연금가입자격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이 담당하는 무급의 재생산 노동이나 보살핌 노동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 파생 수급권인 유족연금과 가급연금 수급자의 절대다수는 여성이지만 그 수급액은 이들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4. 결 론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여성의 사회권에 관한 이론적 개념적 논의를 정리하고 실제 연금제도에 나타난 여성의 수급권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여성의 사회권은 남성의 사회권과 비교할 때 권리가 형성되는 사회적 영역간의 관계가 다르며 또한 훨씬 복잡적이고 파편화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남성의 사회권은 국가-시장의 관계에서 시장에의 의존, 유급노동에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상품화’의 정도에 따라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권은 가족 내 성별분업 하에서 보살핌 노동을 전담하는 아내 혹은 어머니의 지위, 그리고 유급노동자로서의 시장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로 구성되며, 더욱이 가족지위와 시장지위가 밀접하게 상호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성은 남성과 같은 의미의 ‘완전

한 성원권'을 획득하기 어렵다. 여성 사회권의 구체적 제도화 과정은 시기에 따라, 또 각각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복잡하고 상이한 형태를 보인다.

사회권을 시민권의 다른 측면, 즉 개인의 자율성 획득과 정치적 정당성 확보 및 참여의 문제와 교차시켜 본다면, 남성의 사회권은 보호받는 객체의 위치를 '보호를 요구할 주체'의 권리로 역전시킬 수 있는 조직화된 산업노동자의 정치적 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가장인 남성노동자가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들을 수립하여 온 것이다. 그런데 여성은 가족 내의 의존적 지위로 인해 '자율적 개인'으로서의 재산권이나 몸과 성의 자율성을 -- 각 사회의 경험에 따라 시기는 상이하지만 -- 20세기 후반에야 성취하기 시작하였다. 남성과는 다른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여성에 대한 '보호'를 요구해온 역사는 길지만, 그러나 이러한 보호를 '권리'로써 역전시키는 일은 여성의 정치적 참여와 세력화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이나 사회정책들은 여성의 세력화에 기반하여 여성을 정책의 주체로 부각시키려는 여성정책과 맞물릴 때, 비로소 여성의 사회권을 '완전한 성원권'의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단순히 더 많은 여성이 복지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여 여성의 사회권이 더 많이 확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복지수급권이 동반하는 의존의 낙인이 보호받는 집단의 도덕적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프레이저와 고든(Fraser & Gordon 1994)은 미국 사회에서 공민권(civil rights)과 사회권(social rights)이 '계약 대 자선'의 이분법에 의해 상호대립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본다. 독립적 개인들 간의 자발적 계약을 신봉하는 '문화적 신화(cultural mythology)'는 사회권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권리로서 표상할 수 있는 시민권의 상상력을 제약하며, 이는 복지의존(welfare dependency)이나 복지모(welfare mother)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 수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신화가 지속되는 한, 여성의 사회권은 여성의 정치참여나 개인적 자율성과 함께 신장될 수 없다.

서론에서 지적하였듯이 한국의 복지정책이 외형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과연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홍경준·송호근(2004)의 평가에 따르면, 정책의 프로그램이나 수단은 변화되었으나 정책 목적 자체는 변화되지 않았다.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보육제도 확충, 가족대상 서비스 확대 등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지만, 정책의 목표 자체는 이혼율을 낮추어 가족의 복지책임을 강화하고 또 출산율을 높임으로써 차후의 노동력 수급 및 성장 기반을 유지하려는데 맞추어져 있다. 정작 결혼과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사회권이나 일할 권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권리 등은 여성운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논의의 테이블에서 중심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권위주의적 산업화과정을 통해 학습된 물량적

성장 중심의 정책목표는 쉽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책의 패러다임이 지체되어 있는 동안 새로운 사회구성원, 새로이 등장한 세대들의 가치관이나 삶의 질에 대한 기대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에 대해서 걱정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복지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젠더계약'은 무엇이 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여성에게 '완전한 성원권'을 보장하는 제도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가족책임과 노동시장에서의 역할 양자를 오고 가면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생애주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로 인한 불리함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을 가족에 소속된 피부양자나 무력한 보호대상으로 보거나 여성이 처해있는 '불리한 조건'을 당연시하기 보다는,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생애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여성들, 한국 어머니의 생활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한국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애를 설계하고 있으며 취업, 결혼, 출산의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 지, 노동시장 지위와 가족지위를 양립하면서 어떤 시기에 어떤 이유로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지, 이런 과정이 차후 여성의 노후 소득보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밑그림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Daly, M. 2000, '복지국가 비교 : 젠더친화적 접근을 향하여', 한국여성연구회 옮김,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 Esping-Andersen, G. 1990, *Three World of Welfare Capitalism*.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 Esping-Andersen, G. 2002, 'A New Gender Contract', *why we need an New Welfare State*, Oxford.
- Fraser, N. & Gordon, L. 1994, 'A Genealogy of Dependency: Tracing a Keyword of the U.S. Welfare State', *Signs*, Vol. 19, Winter 1994.
- Fraser, N. & Gordon, L., 1994, 'Civil Citizenship against Social Citizenship - On the Ideology of Contract versus Charity', in B. van Steenberg ed., *The Condition of Citizenship*, Sage.
- Fraser, Nancy, 2000, 'After the Family Wage: a Postindustrial thought Experiment', in Hobson, B. ed., *Gender and Citizenship in Transition*, Routledge: New York.

- Hall, P. 1993, "Policy Paradigms, Social Learning, and the State: The Case of Economic Policy Making in Britain", *Comparative Politics* 25(3): 275~296.
- Lister, Ruth, 2000, 'Dilemmas in Engendering Citizenship', in Hobson, B. ed., *Gender and Citizenship in Transition*, Routledge: New York.
- Marshall, T. H.,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in T. H. Marshall & T. Bottomore,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Pluto.
- Mazur, A. G., 2002, *Theorizing Feminist Policy*, Oxford.
- Nelson, J. B. 1990, 'The Origins of the Two-Channel Welfare State: Workmen's Compensation and Mothers' Aid', in L. Gordon ed., *Women, the State, and Welfar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O'Connor, J., Orloff, A., & Shaver, S. 1999, *States, Markets, Families : Gender, Liberalism and Social Policy in Australia, Canada,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rloff, A. 2000(1993), '젠더와 시민의 사회적 권리: 젠더관계와 복지국가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여성연구회 옮김,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 Pateman, C., 1992, 'Equality, difference, subordination : the Politics of motherhood and women's citizenship', in G. Bock & S. James eds., *Beyond Equality and Difference*, Routledge.
- Pearce, D. 1990, 'Welfare is not for Women: Why the War on Poverty Cannot Conquer the Feminization of Poverty', in L. Gordon ed., *Women, the State, and Welfar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Roche, Maurice, 1992, 'Rethinking Citizenship - Welfare, Ideology and Change in modern society', Polity Press.
- Sainsbury, Diane, 1999, 'Gender and Social-Democratic Welfare States', in Sainsbury ed.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Oxford University Press.
- Simm, Birte, 2000, *Gender and Citizenship*,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kocpol, T., 1992, *Protecting Soldiers and Mother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Vogel, Ursula, 1994, 'Marriage and the Boundaries of Citizenship', in B. van Steenbergen ed., *The Condition of Citizenship*, Sage.
- Walby, S. 1997, 'Is Citizenship Gendered?', *Gender Transformations*, Routledge.

- 김선민 · 김수현 외, 2001, <사회권 보장을 위한 기호연구>, 사회권연구모임(미간행 정부보고서)
- 김수완, 2002, '공적 연금에서 과생적 수급권의 의미와 형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20호, pp. 5-30.
- 김영란, 2001, '사회권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 배제에서 포용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지> 13집.
- 김용하 · 석재은 1997,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학> 제31권, pp.247-274.
- 석재은, 2003,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 : 실태, 원인과 정책 방안', <한국사회복지학> 53권, pp. 285~309.
- 송다영, 2004, '가족위기 지표에 대한 비판적 재고찰 : 이혼율과 출산율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5권.
- 신혜섭, 2001, '여성복지적 관점에서의 탈상품화에 대한 대안적 개념의 고찰 및 함의', <한국가족복지학> 8호.
- 엄규숙, 2002, '여성과 국민연금', 한국여성정책연구회 편, <한국의 여성정책>, 미래인력연구원.
- 이남희, 2002, '가족법을 통해 본 결혼의 의미와 여성', <페미니즘 연구> 제 2호, 한국여성연구소.
- 이혜경, 2004, '한국 사회안전망의 재점검과 대책 : 탈가부장적-복지-다원주의 패러다임을 향하여', 한국사회복지학회 발표문.
- 정무권, 2004, '한국 복지국가의 현실과 개혁과제', 한국행정학회 2004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방향과 과제>, pp.692~715.
- 정재훈, 2005, '국민연금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양성평등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3호, pp.31-50.
- 조국, 2004,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 홍경준 · 송호근, 2004,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지속: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5, pp. 205~230.

한국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과제

박 수 미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과제

박 수 미
(한국여성개발원)

1. 들어가는 말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현재 한국사회의 현실과 미래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다. 저출산·고령화로 표현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시점에서, 예상되는 미래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여건 조성'이 모색되고 있다. 그 동안 발전 논리 속에서 일 중심의 사회를 지향해 왔던 우리 사회는 '돌봄 영역'의 공백이 개인의 삶과 사회 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감하고 있다. 한 사회와 그 사회에 속한 개인들이 건강하게 재생산하는 데, 돌봄 노동은 필수적인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사회 성원들은 다양한 이유로 돌봄 노동을 기피하고 있다. 돌봄 노동의 회복은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친밀성에 대한 욕구를 지닌 개인들의 권리의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 세계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개별 가족이 사회적 도움 없이 돌봄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개별 가족내에선 여성이 남성의 도움 없이 돌봄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가 사회적으로 독려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개별가족들이 일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조화시키려고 애쓰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별가족의 가족전략 주체는 부부이며, 생활시간 사용을 중심으로 이들 주체가 실제로 일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지를 생애주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생애주기별 일-가정 조화 현황

1) 가족주기별 특성

사람들은 시간 경과에 따라 다양한 생애과정을 거치며 살아간다. 특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결혼율이 높은 사회인 한국의 경우 가족주기는 개인의 생애과정과 거의 일치한다. 최근 독신율의 증가, 혼인연령의 상승 등으로 일생 동안 혼자 사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지

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 관계 내에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조정해 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족주기별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199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이다. 생활시간조사는 평균적인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 주어진 시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자료는 2일 동안의 행동과 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응답자가 직접 기입한 시간 일지(time diary)로서, 일과 가족생활의 조정 양식을 규명하려는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행동분류체계는 이 글의 끝에 첨부함). 1999년 자료에는 42,973명, 85,906일의 시간일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서 이 연구는 개별 가족단위로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어떻게 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동거하는 가족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분석대상 부인의 연령을 20세-49세로 한정하여 세대 효과를 최소화시키고자 했다. 그 결과 전체 분석대상은 7,597가구이다.

분석대상 가족주기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1주기는 결혼하여 아직 자녀가 없는 부부가족, 2주기는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가 있는 부부가족, 3주기는 자녀가 어느 정도 커서 학령기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족이다(이하 1주기는 '무자녀주기', 2주기는 '미취학주기', 3주기는 '학령기주기'로 부름). 이 글은 일-가족생활 조화를 위한 가족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녀가 커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부부가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세 가지 가족주기의 분포와 부인의 평균연령은 <표 1>에 나와 있다. 무자녀주기는 444가족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한다. 미취학주기와 학령기주기는 각각 전체의 39.59%, 54.56%이다. 부인의 평균연령은 주기별로 각각 27.5세, 31.7세, 40.7세로서 각 가족주기가 어느 정도 시간적 흐름에 따라 배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취학주기 평균 자녀수는 1.85명, 학령기주기 평균 자녀수는 1.89명이다. 각 주기가 출생코호트를 반영하기 때문에 교육수준 역시 생애주기가 높은 단계일수록 낮아진다. 대졸이상 학력자는 무자녀주기 여성 중 36.7%, 미취학주기 여성 중 24.4%, 학령기주기 여성 중 9.5%이다.

<표 1> 가족주기별 특성

				단위: 명(%)	
	자녀 무(無)		미취학자녀 유(有)		학령기이상자녀 유(有)
관측치수(%)	444 (5.84)		3008 (39.59)		4145 (54.56)
여성 평균연령(세)	27.5		31.7		40.7
평균자녀수(표준편차)	0 (0)		1.85 (0.70)		1.89 (0.67)
교육수준					
초졸(%)	1 (0.23)		1 (0.03)		33 (0.80)
중졸(%)	24 (5.41)		305 (10.14)		1832 (44.20)
고졸(%)	256 (57.66)		1967 (65.39)		1883 (47.91)
대졸 이상(%)	163 (36.71)		735 (24.43)		397 (9.58)

그렇다면 가족주기에 따라서 부부의 경제활동 상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주기별 여성의 취업률을 보면, 전형적인 M자형 취업곡선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하여 아직 자녀가 없는 1주기의 경우, 여성의 47.8%가 취업상태인 데 비해 어린 자녀가 있는 2주기 여성 가운데 취업을 한 여성의 비율은 38.3%에 불과하다. 9.5%의 여성이 아이를 낳고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것과 같은 효과이다. 결혼하여 자녀가 없는 1주기 여성들의 취업률도 절반이 채 되지 못한다. 이들 비경제활동여성들 역시 결혼을 통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로서 이후 출산을 대비하여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않은 여성들이 상당수를 차지할 것이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7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3주기에 여성들은 노동시장 재진입을 실행한다. 학령기주기 여성의 61.9%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서 남성들은 모든 가족주기에 걸쳐 93%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며, 전형적인 고원형(∩자형) 취업구조를 지닌다.

<표 2> 가족주기별 부부 취업여부

							단위: 명(%)
	자녀 무(無)		미취학자녀 유(有)		학령기이상자녀 유(有)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취업	212 (47.75)	416 (93.69)	1153 (38.33)	2858 (95.01)	2566 (61.91)	3865 (93.24)	
비취업	232 (52.25)	28 (6.31)	1855 (61.67)	150 (4.99)	1579 (38.09)	280 (6.76)	

그렇다면, 부인의 취업률은 그들의 인적자본과 관련되는가? <표 3>에 따르면 여성들의 대표적인 인적자본인 학력과 취업률은 거의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 여성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자는 13.9%인 데 비해, 비경제활동자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자는 19.4%이다. 반면 취업 여성의 중졸 학력자는 39.3%, 비경제활동자의 중졸 학력자는 20.1%

이다. 물론 이것은 동일한 생애주기에서 여성의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여성의 취업 결정은 그들의 학력과 같은 인적자본에 의해서보다는 그들의 가족주기에 의해서 더 크게 영향 받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박수미, 2002a; 박수미, 2002b). 가족주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여성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학력수준은 낮아진다. 따라서 결혼,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한국여성의 노동공급 패턴에 따라 상대적으로 나이 든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고 그들의 학력수준은 낮다.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선 여성의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표 3> 부인의 취업여부별 교육수준

단위: 명(%)					
노동참가여부	관측치수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유급노동 한다	4211	24 (0.57)	1653 (39.25)	1948 (46.26)	586 (13.92)
유급노동 하지 않는다	3799	17 (0.45)	764 (20.11)	2283 (60.09)	735 (19.35)
총 합	8010	41 (0.51)	2417 (30.17)	4231 (52.82)	1321 (16.49)

2) 가족주기별 생활시간: 일, 가족생활, 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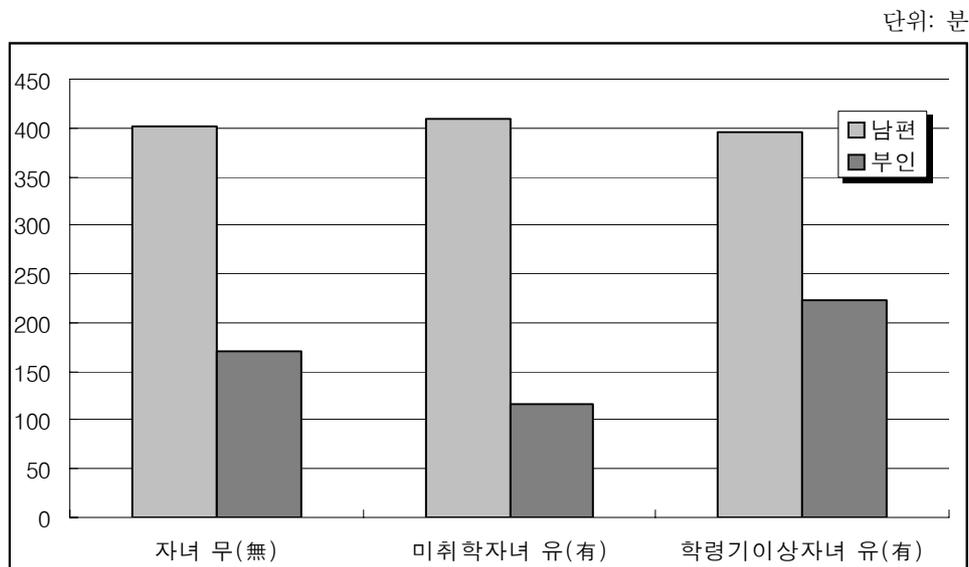
이 절에서는 부부인 남성과 여성이 가족주기별로 ‘일’, ‘가족생활’, ‘여가’를 어떻게 구성하며 일상을 영위하는지 살펴보겠다.

전체 가족주기에서 부인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남편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것은 위에서 살펴본 부부의 취업률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인의 취업률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여성의 전형적인 M자형 취업곡선이 의미하듯이, 부인의 유급노동시간은 미취학자녀주기에서 저점을 이루고 학령기주기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유급노동시간은 자녀가 없는 가족주기보다는 어린 자녀가 있을 때 소폭 상승하고 자녀가 커서 학교에 다닐 때에는 소폭 하락한다. 그 결과 미취학자녀가 없는 3주기에선 부인과 남편의 유급노동시간 차이가 상당히 좁혀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전략의 이유는 무급노동시간의 주기별 변화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표 4> 가족주기별 부부 유급노동시간

가족주기	관측치수	변수	단위: 분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녀 무(無)	444	남편	402.43	237.28	0	890.00
		부인	170.02	232.55	0	890.00
미취학자녀 유(有)	3008	남편	409.00	236.28	0	1200.00
		부인	116.41	192.80	0	1040.00
학령기이상자녀 유(有)	4145	남편	395.94	236.61	0	1010.00
		부인	223.91	242.64	0	1020.00

<그림 1> 가족주기별 부부 유급노동시간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족주기별 부부간 무급노동시간의 차이는 가히 경이적이다. 무급노동은 전통적인 가사노동과 자녀 또는 노인 등에 대한 보살핌 활동을 의미한다. 남편이 부인보다 2배 더 유급노동을 하는 데 비해서, 부인은 남편보다 10배 더 무급노동을 한다. 아이가 있는 집이거나 없는 집이거나 간에 가족내 무급노동은 거의 전적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 7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는 2주기 여성들의 무급노동시간은 1주기 여성보다 두 배나 길다. 미취학주기 여성은 무자녀주기 여성보다 하루 평균 192.3분 더 무급노동을 한다. 미취학주기 남성은 무자녀주기 남성보다 16분 더 무급노동을 할 뿐이다.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란 3주기에선 그나마 늘어났던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이 자녀가 없는 1주기보다도 짧아진다. 그러나 3주기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그다지 줄지 않아서 자녀가 없는 1주기보다 70분 가량 길다. 즉 자녀가 생기면서 개별 가족의 무급노동은 대폭 증가하지만 이 증가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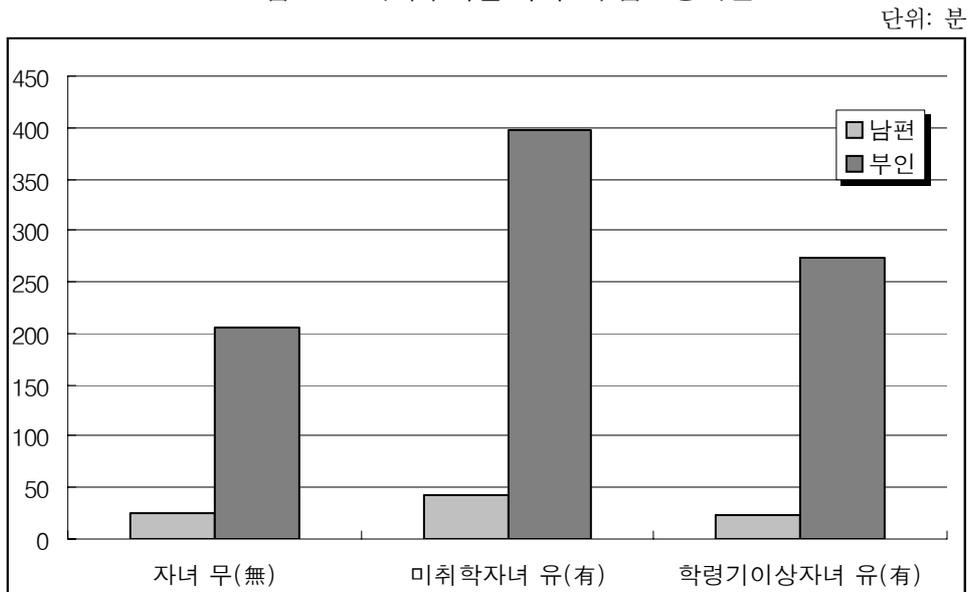
고스란히 여성에게 부가되고 이후 부부간 무급노동의 격차는 해소되지 않은 채 고착되는 것이다.

무급노동의 세부항목별 변화상을 보면(<표 6> 참조), 어린 자녀가 있는 2주기에 여성들의 보살핌노동이 극대화된다. 이 가족주기의 남성 역시 무급노동의 증대량은 거의 전적으로 보살핌노동의 증가에 기인한다. 그러나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란 3주기에서 여성의 보살핌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전통적인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하는 데 비해, 남성의 보살핌 노동이 다시 전무한 상태로 변하면서 가사노동시간은 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간 무급노동 시간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표 5> 가족주기별 부부 무급노동시간

가족주기	관측치수	변수	단위: 분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녀 무(無)	444	남편	25.92	55.17	0	320.00
		부인	206.33	122.47	0	670.00
미취학자녀 유(有)	3008	남편	42.04	70.93	0	720.00
		부인	398.58	176.21	0	990.00
학령기이상자녀 유(有)	4145	남편	24.06	53.52	0	630.00
		부인	272.80	142.89	0	1200.00

<그림 2> 가족주기별 부부 무급노동시간



<표 6> 가족주기별 부부 무급노동평균시간 세부항목

가족주기	관측치수	변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녀 무(無)	444	남편가사	13.40	32.38	0	290.00
		남편쇼핑	8.67	29.20	0	230.00
		남편돌봄	3.85	22.52	0	240.00
		부인가사	171.60	104.54	0	640.00
		부인쇼핑	21.42	33.52	0	240.00
		부인돌봄	13.31	37.16	0	440.00
미취학자녀 유(有)	3008	남편가사	9.30	29.41	0	640.00
		남편쇼핑	6.36	27.56	0	610.00
		남편돌봄	26.39	50.62	0	490.00
		부인가사	212.04	103.16	0	750.00
		부인쇼핑	20.88	32.70	0	380.00
		부인돌봄	165.66	123.00	0	810.00
학령기이상 자녀 유(有)	4145	남편가사	13.31	35.65	0	510.00
		남편쇼핑	6.48	26.94	0	490.00
		남편돌봄	4.26	23.63	0	630.00
		부인가사	220.90	116.22	0	1020.00
		부인쇼핑	20.00	31.18	0	350.00
		부인돌봄	31.89	54.50	0	1050.00

가족주기별 부부의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조정 전략은 여가시간 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의 절반에 불과하면서 아직 자녀가 없는 1주기에서만 여성의 여가 시간이 남성보다 길다(<표 7> 참조). 1주기를 제외하고는 남성이 여성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을 누리고 있는데 3주기의 경우 부부간 여가활용 격차가 극대화된다. 2주기에서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이 대폭 증가하면서 여가시간이 줄어들지만, 여가시간의 감소량보다는 취업 중단을 통해서, 늘어나는 무급노동시간을 보충하는 경향이 강하다. 3주기에선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이 다소 줄어들지만, 이 시기에 그 동안 미뤘던 재취업을 피하기 때문에 여가시간의 감소는 필연적이다.

<표 7> 가족주기별 부부 여가평균시간 세부항목

단위: 분

가족주기	관측치수	변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녀 무(無)	444	남편매체	147.12	122.09	0	690.00
		남편레저	65.83	98.06	0	810.00
		부인매체	179.32	126.83	0	610.00
		부인레저	62.25	89.60	0	420.00
미취학자녀 유(有)	3008	남편매체	130.24	116.04	0	770.00
		남편레저	55.37	85.38	0	940.00
		부인매체	130.12	100.23	0	640.00
		부인레저	39.00	65.02	0	700.00
학령기이상 자녀 유(有)	4145	남편매체	150.63	128.63	0	940.00
		남편레저	65.63	90.16	0	660.00
		부인매체	132.17	105.68	0	750.00
		부인레저	46.76	72.33	0	6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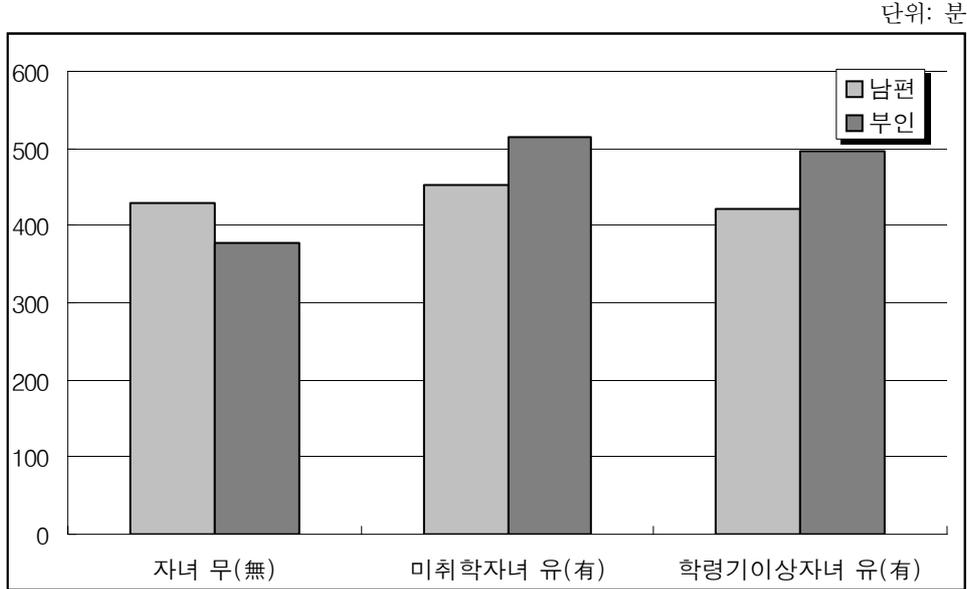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합한 총노동시간의 가족주기별 분포를 살펴보자. 1주기를 제외한 가족주기에서 여성의 총노동시간이 남성보다 길다. 즉 여성들은 자녀가 생기면서부터 무급노동의 전담 및 이후 유급노동과의 병행이라는 이중부담 속에서 하루하루를 일 속에서 살아 가고 있는 것이다. 미취학주기에서 남성의 총노동시간도 일생 중 극대화되지만 이후 노동시간이 감소함으로써 일-가족생활의 조화는 여성만의 문제처럼 바뀐다.

<표 8> 부부의 하루평균 총노동시간

단위: 분

가족주기	관측치수	변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녀 무(無)	444	남편	430.18	214.74	0	890.00
		부인	377.25	185.57	20	860.00
미취학자녀 유(有)	3008	남편	452.26	215.04	0	1200.00
		부인	515.18	166.28	0	1110.00
학령기이상자녀 유(有)	4145	남편	420.51	223.26	0	1020.00
		부인	497.16	188.36	0	1200.00

<그림 3> 부부의 하루평균 총노동시간



3) 맞벌이 부부의 가족주기별 생활시간: 일, 가족생활, 여가

전체 가족주기별로 부부의 일, 가족생활 조정 전략을 보면, 무급노동이 극대화되는 미취학 주기에 여성들은 비경제활동자로 전환하여 가족 활동에 전념하고 남성은 일생 동안 생계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인 평균값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가족주기와 상관없이 취업을 유지하는 맞벌이부부의 부부간 가족전략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간 유급노동시간 격차는 근소하지만 모든 가족주기에 남성이 여성보다 길다. 부부간 유급노동시간의 격차가 가장 큰 가족주기는 미취학주기이고 격차가 거의 해소되는 가족주기는 학령기주기이다. 이것은 여성의 비정규직화 현상 등에 따라 여성의 평균 근로시간이 남성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미취학주기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남성보다 현저히 짧은 것은, 출산 이후에도 여성이 계속 취업을 유지하지만 노동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었음을 암시한다. 이에 비해 남성은 미취학주기에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길어진다. 신고전경제학에서는 어린 자녀가 있는 시기에 남성은 시장노동을 극대화함으로써 가계 수요를 충족시키고, 여성은 시장노동을 최소화하고 가족활동을 극대화함으로써 자녀로 인한 시간 긴장에 대응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라고 했다(Becker, 1981; Bryant, 1990). 적어도 현상적으로 볼 때, 한국사회 가족들은 신고전경제학의 명제에 부합한 가족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표 9> 맞벌이 부부 가족주기별 부부 유급노동시간

가족주기	관측치수	변수	단위: 분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녀 무(無)	212	남편	404.06	242.49	0	890.00
		부인	347.50	224.83	0	800.00
미취학자녀 유(有)	1153	남편	425.22	230.97	0	1040.00
		부인	294.15	208.61	0	1040.00
학령기이상자녀 유(有)	2566	남편	408.99	231.86	0	1010.00
		부인	355.87	218.72	0	1020.00

맞벌이 부부의 가족주기별 무급노동시간 사용 분포 역시 전체 부부의 무급노동시간 사용 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차이점은 전반적으로 취업여성들의 무급노동시간량이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시간량보다 30분-100분 가량 작다는 것이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남편은 무급노동이 증대하는 미취학주기에서 전체 남성보다 무급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오히려 줄고 그 대신 유급노동시간을 늘리고 있다. 흔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성외벌이 및 전업주부 부부보다 부부간 가사분담율이 공평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분석 결과, 미취학주기 맞벌이 부부에서 전통적인 성별 분업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시간 세부 항목 역시 여성의 절대 시간량이 감소했지만 부부간·가족주기별 격차는 전체 부부의 세부 항목 패턴과 거의 유사하다.

<표 10> 맞벌이 부부 가족주기별 부부 무급노동시간

가족주기	관측치수	변수	단위: 분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녀 무(無)	212	남편	26.70	52.01	0	290.00
		부인	140.05	105.37	0	660.00
미취학자녀 유(有)	1153	남편	39.56	70.39	0	720.00
		부인	288.53	155.01	0	990.00
학령기이상자녀 유(有)	2566	남편	25.69	54.94	0	550.00
		부인	220.04	120.88	0	1030.00

<표 11> 맞벌이 부부 가족주기별 부부 무급노동평균시간 세부항목

단위: 분

가족주기	관측치수	변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녀 무(無)	212	남편가사	14.48	32.88	0	250.00
		남편쇼핑	8.73	28.06	0	230.00
		남편돌봄	3.49	17.01	0	180.00
		부인가사	116.65	85.81	0	430.00
		부인쇼핑	12.69	26.08	0	160.00
		부인돌봄	10.71	38.87	0	440.00
미취학자녀 유(有)	1153	남편가사	10.76	33.11	0	640.00
		남편쇼핑	5.11	25.89	0	530.00
		남편돌봄	23.69	49.37	0	490.00
		부인가사	167.78	98.79	0	750.00
		부인쇼핑	14.25	26.33	0	270.00
		부인돌봄	106.50	93.61	0	720.00
학령기이상 자녀 유(有)	2566	남편가사	15.16	38.32	0	510.00
		남편쇼핑	6.64	28.13	0	490.00
		남편돌봄	3.89	24.45	0	540.00
		부인가사	184.33	102.69	0	1020.00
		부인쇼핑	13.65	25.25	0	300.00
		부인돌봄	22.06	36.46	0	400.00

결혼 및 출산 이후에도 계속 취업을 유지하는 기혼여성들은 무급노동을 전담하는 입장에서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여가 시간을 축소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든 가족주기에서 여성의 여가 시간이 남성보다 적으며 부부간 여가시간의 격차가 가장 큰 시기는 자녀가 자란 3주기이다(<표 12> 참조). 일하는 엄마들은 일을 지속하는 한, 바깥일과 집안일을 도맡아야 하는 슈퍼맨으로서 자기 착취적인 일상을 영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합한 총노동시간의 가족주기별·부부별 분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표 13> 참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든 가족주기에서 여성의 여가 활동이 열악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가족주기에서 여성의 노동시간이 남성의 노동시간보다 길다. 남편과 부인 모두 미취학주기에서 노동시간이 극대화되지만,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면서 총노동시간의 감소폭이 남성에게서 보다 크게 나타남으로써 여성의 이중부담은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

<표 12> 맞벌이 부부 가족주기별 부부 여가평균시간 세부항목

가족주기	관측치수	변수	단위: 분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녀 무(無)	212	남편매체	147.74	124.03	0	620.00
		남편레저	62.88	95.06	0	600.00
		부인매체	116.04	94.56	0	520.00
		부인레저	33.11	64.97	0	390.00
미취학자녀 유(有)	1153	남편매체	125.94	112.28	0	730.00
		남편레저	55.92	87.27	0	790.00
		부인매체	94.25	84.34	0	550.00
		부인레저	25.85	46.11	0	350.00
학령기이상 자녀 유(有)	2566	남편매체	146.93	124.50	0	890.00
		남편레저	63.02	88.12	0	650.00
		부인매체	99.61	85.71	0	710.00
		부인레저	31.18	52.88	0	490.00

<표 13> 맞벌이 부부 부부의 하루평균 총노동시간

가족주기	관측치수	변수	단위: 분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녀 무(無)	212	남편	432.50	220.45	0	890.00
		부인	489.43	186.91	70	860.00
미취학자녀 유(有)	1153	남편	465.68	215.02	0	1040.00
		부인	583.18	166.43	0	1110.00
학령기이상자녀 유(有)	2566	남편	435.27	218.63	0	1020.00
		부인	576.47	170.88	0	1080.00

4) ‘미취학주기’ 이중부담의 완화 전략: 보육의 시장화

어린 자녀가 생김으로써 부모의 시간과 자원을 긴장시키는 미취학주기에서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시키려는 부부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성별분업의 강화였다. 미취학주기에서 취업을 계속하는 38.3%, 1,153명의 여성들은 남편과의 공평한 가사분담보다 자녀양육의 시장화를 통해서 이중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취업여성의 55.5%가 유료보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전업주부 가운데 유료 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은 26.8%였다.

<표 14> 부인 취업 여부에 따른 유료보육 여부

단위 : 명(%)

	관측치수	유료보육 한다	유료보육 하지 않는다
취업	1153	640 (55.51)	513 (44.49)
비취업	1855	497 (26.79)	1358 (73.21)
총합	3008	1137 (37.80)	1871 (62.20)

<표 15>에 따르면, 취업여성의 주당 평균 유료보육 시간은 19.9시간, 전업주부의 주당 평균 유료보육 시간은 7.2시간이다. 취업여성의 주당 평균 보육비용은 18,500원, 전업주부의 주당 평균 보육비용은 7,770원이다. 취업여성의 유료보육시간과 비용은 전업주부의 유료보육시간과 비용보다 세 배 가까이 많다.

<표 16>은 실제로 유료보육을 이용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취업 여부에 따른 보육시간과 보육비용의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취업여성 가운데 실제로 유료보육을 이용하는 여성들은 55.5%, 640명이며 전업주부 가운데 실제로 유료보육을 이용하는 여성들은 26.8%, 497명이다. 취업여성의 주당 평균 유료보육 시간은 35.9시간, 전업주부의 주당 평균 유료보육 시간은 26.8시간이다. 취업여성의 주당 평균 보육비용은 33,300원, 전업주부의 주당 평균 보육비용은 28,990원이다. 실제로 유료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시간과 비용은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15> 부인 취업 여부에 따른 평균 보육시간 및 보육료: 전체 여성

단위: 시간

	관측치수	변수	평균시간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취업	1153	주당 유료보육 시간	19.92	19.92	0	99.00
		주당 보육료	18.50	18.50	0	200.00
비취업	1855	주당 유료보육 시간	7.18	7.18	0	70.00
		주당 보육료	7.77	7.77	0	155.00

<표 16> 부인 취업 여부에 따른 평균 보육시간 및 보육료: 유료보육 이용 여성

단위: 분

	관측치수	변수	평균시간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취업	640	주당 유료보육 시간	35.89	14.43	4.00	99.00
		주당 보육료	33.33	23.00	4.00	200.00
비취업	497	주당 유료보육 시간	26.79	8.82	1.00	70.00
		주당 보육료	28.99	16.61	4.00	155.00

<표 17>은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라 자녀 보육을 누구에게 맡기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취업 부인의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자녀 보육을 맡기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비취업 부인의 경우 학원에 보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적으로는 어린이집에 유료보육을 맡기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어린 자녀가 있으면서 취업을 계속하는 2주기의 기혼취업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등 가족들에게 자녀 양육을 의존하며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표 17> 부인 취업 여부별 아이 돌보는 사람

단위: 명(%)

	관측치수	가족/ 친인척	이웃/ 가사도우미	놀이방	어린이집	선교원	학원	기타
취업	640	86 (13.44)	33 (5.16)	83 (12.97)	226 (35.31)	43 (6.72)	146 (22.81)	23 (3.59)
비취업	497	34 (6.84)	4 (0.80)	39 (7.85)	179 (36.02)	33 (6.64)	164 (33.00)	44 (8.85)
총합	1137	120 (10.55)	37 (3.25)	122 (10.73)	405 (35.62)	76 (6.68)	310 (27.26)	67 (5.89)

3. 맺음말

지금까지 가족형성기, 가족확대기를 거치면서 부부가 어떻게 일과 가족생활을 조정해 가는지 살펴보았다. 가족주기별로 일과 가족생활의 조정 역할은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지위 변화를 통해서만 달성되는 듯하다. 즉 자녀가 없는 1주기에 여성의 1/2이 취업하고 있다가 어린 자녀가 있는 2주기에 여성의 2/5가 취업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란 3주기에 여성의 3/5이 취업한다. 이에 비해 남성은 모든 가족주기에서 93%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며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가족주기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퇴장뿐만 아니라 총노동시간과 여가활용의 변화도 여성에게서 훨씬 큰 폭으로 발견된다. 특히 부모의 시간과 자원 긴장을 촉발하는 미취학주기에서 부부는 성별 역할 분담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듯하다. 신고정경제학과의 주장처럼 한국사회 미취학자녀를 둔 부부의 합리적 선택은 여성의 시장노동 감소 및 가사노동 증대와 남성의 시장노동 증대인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어쨌든 부부가 함께 결정한 가족전략이다. 그러나 합리적 선택인 것처럼 보이는 이 전략적 행위가 노동자로서의 여성에게는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

J. Jacobs는 여성전형적인 직종에 여성이 많은 현상은 그저 노동이동이 잦은 여성들이 이

동과정에서 거쳐 가는 한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Chan, 1999).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김종숙·박수미, 2003; Corcoran & Duncan, 1979) 여성전형적인 직종이나 비정규직과 같은 열악한 고용형태의 트랩 효과를 입증하였다. 비정규직 경험은 정규직으로의 이동에 가교(bridge)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진입하면 빠져나갈 수 없는 덫(trap)으로 작용하며(장지연, 2001)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에게서 더욱 심각하다. <표 18>은 가족주기별로 여성의 종사상 지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노동이동에 따른 여성의 비정규직화 현상은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김종숙·박수미, 2003). <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임금노동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 양상은 매우 열악하다. 남녀 모두 생애단계가 높아질수록 비임금노동자의 비율이 늘어나지만, 변화의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인다.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은 데 반해,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이동이 1주기에 비해 2배에서 3배에까지 이른다.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임금 없이 정규 노동시간의 1/3이상을 수행하는 가내 노동자를 의미한다. 즉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따라서 노동자성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한국사회 여성 노동의 실태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열악한 종사상 지위에,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노동시장 재진입을 피하는 3주기 여성들의 상당수가 편입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모든 사회적 조건을 전제하고서 부부가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인 것이다.

<표 18> 가족주기별 종사상지위

가족주기	변수	N	임금노동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
자녀 무(無)	남편	199	161 (80.90)	11 (5.53)	26 (13.07)	1 (0.50)
	부인	212	165 (77.83)	5 (2.36)	17 (8.02)	25 (11.79)
미취학자녀 유(有)	남편	1103	599 (54.31)	112 (10.15)	386 (35.00)	6 (0.54)
	부인	1153	616 (53.43)	18 (1.56)	188 (16.31)	331 (28.71)
학령기이상 자녀 유(有)	남편	2434	1144 (47.00)	202 (8.30)	1061 (43.59)	27 (1.11)
	부인	2566	1272 (49.57)	51 (1.99)	437 (17.03)	806 (31.41)

결론적으로 볼 때, 가족주기별 일-가족생활 조화를 위한 개별가족의 전략은 가족내 돌봄 노동 영역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결여를 여실히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개별 가족내에서도 부부는 마치 단일한 이해 관계를 지닌 단위처럼 보이지만, 실제 행해지는 일-가족생활 양립

전략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 변화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단일한 이해 관계에 기반하여 부부가 합리적으로 내린 선택의 결과는 여성의 인적자본을 감가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가족 모델은 현재 가족관계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불안정을 경험하고 커리어 지향적 가치관을 지닌 젊은 세대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선호될 수 없을 것이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친밀성에 대한 욕구가 현재의 가족제도로서 충족되지 못할 때, 그 제도는 변화되어야 하지만 그 변화 과정은 그다지 평탄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저출산으로 표현되는 돌봄노동의 기피 현상을 문제의 핵심에 놓고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고 함께 가족성원들을 돌볼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와 기업이 나서야 할 때이다.

참고 문헌

- 김종숙 · 박수미. 2003. 『한국여성의 노동이동』. 한국여성개발원.
- 박수미. 2002a. 「한국여성의 ‘인적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인구학』, 제25권 1호.
- _____. 2002b. 「한국여성의 첫 취업 진입 · 퇴장에 미치는 생애 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 제36권 2호.
- 장지연. 2001.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쟁점”. [경제와사회]. 가을호(51호).
- Becker, Gary S.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ryant, W. Keith. 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n, Tak Wing. 1999. “Revolving Doors Reexamined: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Over the Life Cours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4.
- Corcoran, Mary & Greg J. Duncan. 1979. “Work History, Labor Force Attachment, and Earnings Differences Between Races and Sexe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4(winter): 3-20.

<부표> 행동분류체계

시간 분류	행동체계분류			
비 자 유 시 간	개인유지 (필요시간)	개인유지	11 수면 12 식사 및 간식 13 개인관리 14 건강관리(의료적) 199 기타 개인유지	
	유급노동 (계약시간)	일	21 고용된 일 및 자영업 22 무급가족종사일 23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24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25 구직활동 26 일관련 물품구입 27 기타일 관련 행동	
		학습	31 학생의 학교교습 32 학생의 학교외 학습 33 학습관련 물품구입	
	무급노동 (의무시간)	가사노동	41 음식준비 및 정리 42 의류관리(421~424) 43 청소 및 정리 44 그 외 집 관리 461 가계부 정리 462 가정계획 499 기타 가사일 463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재화/용역 구입	441 집손질 및 관련서비스 받기 442 세차, 차량 관리 및 관련 서비스 받기 45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족보살피기	51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52 초·중·고생 보살피기 53 배우자 보살피기 54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55 그 외 가족 보살피기	
자 유 시 간	잔여범주 (여가소비)	조직활동	61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62 지역공동체 활동 63 사회참여 활동 64 자원봉사 74 종교활동	
		교제활동	71 교제활동 755 유흥(술, 춤, 노래방)	
		레저활동	학습	73 일반인의 학습
			문화	75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취미	76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77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425 재봉, 뜨개질 780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 구입 (아이쇼핑, 비디오 빌리기)		
대중매체	72 대중매체 이용			